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 脫稅規模의 推定과 稅收推計의 正確性 提高

成明宰 · 1999. 12



序 言

그 동안 각계에서는 稅收推計의 正確性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97년말 이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稅收가 크게 減少하였고 稅收推計의 誤差가 크게 擴大되어 稅收推計의 正確性 提高의 必要性이 더욱 절실해졌다.

稅收推計의 誤差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 오차,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예측오차, 분석방법의 오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밖에 脫稅에 의해서도 세수추계의 正確性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稅收推計의 正確性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脫稅規模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정하여야만 한다.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목 가운데 가장 세수비중이 큰 것은 附加價値稅와 所得稅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脫稅比率에 따라 세수가 차이가 나게 되어 세수추계의 正確性이 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목에 대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표양성화의 정도, 즉 탈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세의 탈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세목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수추계의 正確性 제고를 위한 탈세규모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풍부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이 부담하는 稅目 가운데 가장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인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를 대상으로 탈세규모를 추정

함으로써 이들 세목에 대한 稅收推計의 正確性を 提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착수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방법론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새로운 분석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연구의 범위와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成明宰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は 자료 수집 및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李恩鏡 研究員과 尹惠順 研究助員 및 校訂을 보아준 出版課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 밖에 자료협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부처의 관계관계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 의견을 정리한 것이고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 一 鎬

目 次

I. 序	11
II.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構造 및 分析方法	19
1. 綜合所得稅의 構造	19
가. 課稅體系	19
나. 稅率體系	21
다. 稅收現況	21
2. 附加價值稅의 構造	23
가. 課稅體系	23
나. 納稅義務者	23
다. 稅收現況	25
3. 綜合所得稅 脫漏所得·脫稅規模 및 附加價值稅 脫漏課標 推定方法	25
가.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의 推定方法	25
나. 附加價值稅 脫漏課標 및 脫漏稅額의 推定方法	31
4. 附加價值稅 稅收推計의 方法	34
가. 附加價值稅 稅收推計 方法의 種類	34
나. 回歸分析을 이용한 附加價值稅 課稅標準(稅收) 推定方法	37
다. 產業聯關表를 이용한 附加價值稅 課稅標準 推定方法 ...	38
라. 分析資料	41
5. 稅收 및 脫稅效果 分析方法	42
6. 諸般 假定에 대한 留意事項	43

7. 既存 研究와의 研究方法論 比較	45
III.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稅收推計	47
1. 綜合所得稅의 稅收推定	47
가. 個人事業所得者の 所得推定	47
나. 綜合所得稅 負擔 및 所得申告率의 推定結果	54
2. 附加價值稅 稅收推定	56
가.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值稅 稅收推定	56
나. 產業聯關分析을 통한 附加價值稅 稅收推定	58
다. 稅收實積과의 比較	60
라. 分析結果 解釋時의 留意事項	63
IV.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의 推定	68
1.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規模의 推定	68
2.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推定	69
가. 脫稅規模의 推定結果	69
나. 脫稅規模 變動의 要因分析	70
3. 附加價值稅 脫漏課標 및 脫稅規模의 推定	73
가. 附加價值稅 脫漏課標의 推定	73
나. 附加價值稅 脫稅規模의 推定	75
다. 附加價值稅 脫稅規模의 區分	75
V. 要約 및 結論	79
參考文獻.....	82
附錄 I : 綜合所得稅 課稅體系 - 控除體系를 中心으로	84
1. 勤勞所得控除의 變遷	84
2. 人的控除의 變遷	86
3. 特別控除의 變遷	88

4.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變遷	92
附錄 II：效用極大化를 利用한 適正 所得申告率	94
附錄 III：都市家計年報 原始資料	98
1. 資料構成	98
2. 所得特性	99
3. 消費支出 特性	101
附錄 IV：1984~1977年 資料를 사용한 回歸分析 結果 ...	103
附錄 V：產業分類：課稅部門 및 非課稅 部門의 分類	104
1. 28部門	104
2. 77部門	105
3. 168部門	107
4. 402部門	111
附錄 VI：所得稅 負擔 推定結果	119
1. 勤勞所得稅 負擔	119
2. 利子·配當所得稅 負擔	120
3. 所得稅 總負擔 計	122
4. 稅法改正效果의 推定結果	123
가. 推定結果	123
나. 稅法改正效果의 效果比較	123

表 目 次

〈表 II-1〉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收推移	22
〈表 II-2〉 附加價値稅 課稅人員과 課標	24
〈表 III-1〉 勤勞所得者의 所得函數 推定結果	52
〈表 III-2〉 綜合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 (自營業者 家口)	56
〈表 III-3〉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定 結果 (1984~1994年 資料)	57
〈表 III-4〉 投入產出表를 이용한 附加價値稅 稅收推計	59
〈表 III-5〉 稅收推計值의 比較	62
〈表 IV-1〉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69
〈表 IV-2〉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推定結果	70
〈表 IV-3〉 附加價値稅 脫漏課標 및 脫稅規模의 推定結果 (消費法)	74
〈附表 I-1〉 勤勞所得控除 體系의 變化推移	85
〈附表 I-2〉 所得稅 基本控除의 變化推移	87
〈附表 I-3〉 所得稅 追加控除의 變化推移	87
〈附表 I-4〉 所得稅 特別控除의 範圍와 限度의 變化推移	91
〈附表 I-5〉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變化推移	92
〈附表 III-1〉 都市家計年報 調查資料의 標本 數	100
〈附表 III-2〉 都市家計年報 調查資料의 所得 特性 (勤勞者 家口)	101
〈附表 III-3〉 都市家計年報 調查資料의 消費支出 特性	102

〈附表 V-1〉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定 結果 (1984~1997年 資料)	103
〈附表 V-2〉	産業部門別 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 (28部門)	104
〈附表 V-3〉	産業部門別 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 (77部門)	105
〈附表 V-4〉	産業部門別 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 (168部門)	107
〈附表 V-5〉	産業部門別 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 (402部門)	111
〈附表 VI-1〉	勤勞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 (勤勞者 家口)	120
〈附表 VI-2〉	利子·配當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	121
〈附表 VI-3〉	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	123
〈附表 VI-4〉	所得稅法 改正效果의 推定結果(總所得稅 負擔 平均)	124

圖 目 次

[圖 II-1]	우리나라 綜合所得稅制의 課稅體系	20
[圖 II-2]	個人事業所得者의 脫漏所得 推定作業의 흐름도 ...	28

I. 序

그 동안 각계에서 稅收推計의 正確性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특히 1997년말 이래 金融 및 外換危機에 따른 급격한 景氣萎縮으로 稅收가 크게 減少하면서 稅收推計의 誤差가 크게 擴大되어 稅收推計의 正確性 提高의 必要性이 더욱 절실해졌다.

세수추계가 부정확한 것은 통계분석상의 오차,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오차 등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誤差, 모형 설정이나 분석방법 등의 誤謬 등과 같이 분석 자체의 오류 등에 기인한다. 그 밖에도 脫稅에 의해서도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稅收推計의 正確性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이나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이 올바르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脫稅規模에 대한 추정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稅收比重이 높은 稅目은 附加價値稅와 所得稅이며, 脫稅의 경우에도 규모 측면에서 두 세목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所得稅는 원칙적으로 綜合所得稅 體系로 되어 있다. 소득세 세수는 편의상 申告分과 源泉分 稅收로 구성된다. 사업소득자 등이 납세의무를 지니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前者의 대표적인 예이며,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 등은 後者의 대표적인 예이다. 附加價値稅는 稅收 確保, 根據課稅 基盤 確立, 二重課稅 防止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기여도가 높다¹⁾.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

1) 柳時權(1996) 참조.

가치세의 상당 부분이 탈세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는 경기나 탈세 등에 따라, 이들 세목의 세수여건에 따라 국세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事業所得者의 경우에는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역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기도 하다. 흔히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자들은 課標의 隱蔽·縮小 등의 방법을 통해 附加價值稅를 脫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표가 곧 綜合所得稅의 課標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附加價值稅의 脫稅가 곧 所得稅의 脫稅를 의미한다²⁾.

개인사업자들은 두 세목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시 신고서의 내용을 일치시킨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자료가 서로 불일치하여 징세당국으로부터 탈세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크게 증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세통합전산망이 구축된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脫稅는 稅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타의 경제여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탈세비율의 변동에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추계가 보다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여건과 세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탈세규모 및 탈세비율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존의 세수추계 연구에서는 탈세까지 고려하여 세수를 추계한 경우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附加價值稅 및 附加價值稅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납부하는 綜合所得稅에 대해 脫稅規模를 추정함으로써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에

2) 脫稅는 制度圈 및 非制度圈 모두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制度圈이라 함은 國民計定에 포착되는 부문을 일컫도록 하며, 따라서 비제도권은 국민계정에 포착되지 않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대한 潛在的 稅收規模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이들 세목에 대한 총체적인 稅收推計의 正確性を 제고하고자 한다.

脫稅規模 推定을 통해 稅收推計의 正確性を 제고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법개정이나 경제여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세수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즉, 稅政, 徵稅技術, 納稅意識, 所得分布 등이 變化하게 되면 세수는 달라지게 된다. 만약 이러한 요인에 의한 세수효과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면, 세수추계가 아무리 경제여건을 잘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세수에측오차는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한 稅收效果를 충분히 반영하여 일반적인 세수추계를 통해 예측한 세수추계치에 위의 요인에 의한 稅收效果를 합산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이 고양되어 소득신고율이 평균적으로 10% 상승하였다고 하자. 일반적인 세수추계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소득신고율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 요인을 간과하게 되어 세수를 과소하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탈세규모 추정을 통해 각종의 외부적 납세환경의 변화요인에 따라 과생되는 稅收效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정 강화, 징세기술의 발전, 납세의식 제고, 소득분포의 변화 등에 따른 세수효과를 일반적인 세수추계치에 합산해 줌으로써 稅收推計의 正確性を 제고할 수 있다.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 推定을 위해 방법론적으로 미시분석과 거시분석을 모두 동원하여 양자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함으로써 분석의 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巨視分析은 세수나 탈세규모의 추세적 흐름을 추정하는 데에는 우수하지만 세법개정 효과나 성실신고도, 징세당국의 의지 등에 따른 납세의식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微視分析의 경우에는 후자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용이하

지만 추세적 흐름을 추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미시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세수를 추계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납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도가 고정된 상태하에서 세법개정 효과 등에 대한 추정은 가능하지만 여타 여건의 변화와 탈세규모 등의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거시 및 미시분석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만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脫稅規模 推定이나 稅收推計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탈세규모 추정을 위한 세수추계 또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탈세규모의 추정 등과 같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심층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脫稅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에 대한 脫稅規模를 추정한 柳一鎬(1992, 1998)의 연구가 있다. 脫稅規模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수추계를 이용한 방법과 여타의 방법에 의한 것이 있다. 그 가운데 柳一鎬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가 後者의 범주에 속한다. 반면에 前者의 方法을 통한 脫稅規模의 推定은 중요성이 매우 크면서도 지금까지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脫稅規模의 推定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稅收推計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탈세규모 추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세수추계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탈루소득 규모 추정에는 성공적이지만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의적인 가정에 의존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稅收推計의 正確性 提高를 위한 탈세규모 추정에 있어서는 세수추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崔洸(1987), 柳一鎬(1998)의 연구 등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탈세 관련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세수추계 작업이 생략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脫漏所得 추정에 있어서는 비교

적 성공적이었지만 脫稅規模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의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것은 연구방법론상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시자료를 이용한 납세자 표본별 세수추계 작업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도 있다. 또한 방법론상으로도 각종 공제제도와 누진세율 체계를 지닌 소득세에 대한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다른 예로는 崔濬旭(1997)의 연구 등과 같이 소득신고율 또는 소득포착률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청에 신고한 소득분포와 여타 자료에서 나타난 소득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방법도 결과적으로 탈루소득을 추정하는 데 그칠 뿐 탈루세액 추정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수추계 작업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稅收推計의 方法을 이용하여 事業所得者들의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에 대해 추정해보고자 한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관련하여 세수추계에 대한 연구로는 柳一鎬(1990), 成明宰·玄鎭權(1994), 成明宰(1995, 1997A, 1998B)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稅收函數를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세수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추정하였다. 이 가운데 柳一鎬(1990)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함께 產業聯關分析을 통한 稅收推計를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MF의 Pellechio and Hill(1996)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附加價値稅 稅收推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잠비아를 모델로 模擬實驗을 수행하였다.

그 밖에 稅法改正에 따른 稅收效果 推定과 관련한 연구로는 羅城麟·玄鎭權(1993), 안석환·강인수·김종민·전영준(1998), 成明宰·全瑛俊(199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가상적으로 稅法改正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附加價値稅 또는 所得稅

등에 대한 세법개정 효과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수추계가 매우 중요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세수추계 방법은 방법론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회귀분석을 통한 세수추계에서는 대부분 징수분 세수실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는 세수추계가 歸屬分 稅收보다는 徵收分 稅收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세수함수의 추정결과가 의문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產業聯關分析을 통한 기존의 附加價値稅 稅收推計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歸屬分 稅收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徵收分 稅收와 비교하는 등 시차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綜合所得稅 原始申告資料를 이용하여 綜合所得稅의 稅收效果를 추정한 成明宰·全瑛俊(1998) 등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세수추계와 달리 徵視納稅原始資料를 사용하여 稅法改正 效果를 추정하고 模擬實驗을 통해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납세신고자료 자체가 이미 실제 소득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課標陽性化率 變化에 의한 稅收效果를 推定하는 것과는 상당히 크게 괴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稅收推計 研究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방법론적으로 위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수추계방법을 시도하였다. 일차적으로 歸屬分 稅收를 중심으로 回歸分析 및 產業聯關分析에 의한 附加價値稅 稅收推計方法을 비교하여 附加價値稅의 稅收를 논리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所得·消費의 函數關係를 이용하여 事業所得者들의 脫漏所得 規模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柳一鎬(1998) 등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所得稅와 附加價値稅를 연계시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차적으로 개인사업소득자들의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세수추계 과정을 거쳐 脫漏所得의 比率과 綜合所得稅 脫稅規模를 추정한다. 또한 개인사업소득자들의 탈루소득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면세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부문의 비중을 활용하여 탈루소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탈루과표 또는 탈세규모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탈루소득 및 탈세규모 추정시,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를 통해 민간소비지출 중 과세부문의 비중 등을 추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세수추계 작업을 활용하게 된다.

비단 脫稅規模의 推定은 地下經濟의 規模를 推算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식이나 징세노력 등의 제반 여건이 변함에 따른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收效果를 推定할 수 있다는 데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소득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도와, 징세당국의 과표양성화 노력, 기타 세법이 개정되는 등 세수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책변화의 효과분석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를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각종 요인의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세수추계치를 수정하여 총체적인 稅收推計의 正確性을 提高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방법론적으로 세수추계의 수정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이 특정 시점에 대한 세수추계치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脫稅推定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II章에서는 탈세규모 추정 및 세수추계에 앞서 附加價値稅와 綜合所得稅의 構造와 現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附加價値稅와 綜合所得稅에 대한 稅收推計의 方法과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第III章에서는 微視分析과 回歸分析 및 產業聯關分析의 方法을 이용하여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세수를 추계한 결과를 살펴본다. 第IV章에서는 綜合所得稅 확정신고시 所得申告率과, 申告所得金額, 綜合所得稅收 및 脫漏所得의 規模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고,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를 추정해본다. 第V章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향후 보완과제 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II.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構造 및 分析方法

본장에서는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과세체계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탈루소득 추정을 통한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脫漏稅收 規模 推定方法과, 산업연관분석 및 회귀분석 방법을 통한 附加價值稅의 稅收推計方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 綜合所得稅의 構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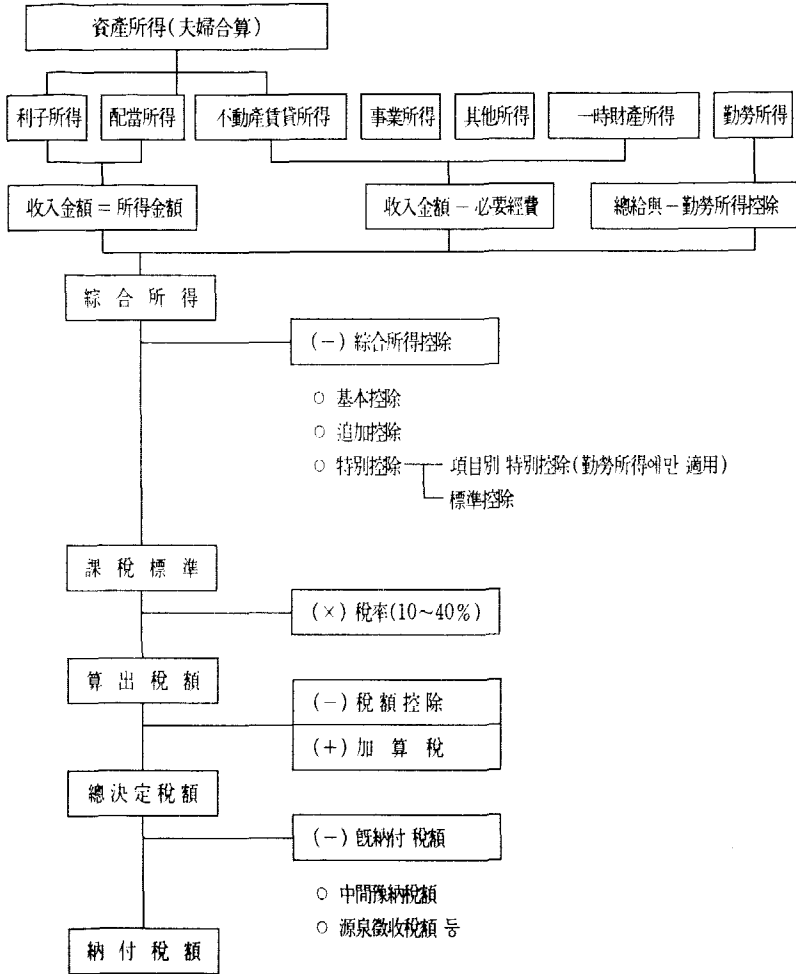
본절에서는 事業所得者들이 납세의무를 지니는 綜合所得稅의 課稅體系에 대해 살펴본다.

가. 課稅體系

綜合所得稅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산소득은 夫婦의 所得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은 人別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출한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합산한다.

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成明宰(1997B), 成明宰·全瑛俊(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圖 II - 1] 우리나라 綜合所得稅制의 課稅體系



註 : 1.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가운데 원천분리과세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2. 표준공제는 1996년부터 적용됨.

산출된 종합소득으로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공제하여 課稅標準을 산출한다. 基本控除은 인적공제의 하나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追加控除 역시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6세 이하의 直系卑屬(女性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경우에 한함)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해준다.

特別控除은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로 구분된다. 前者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保障性)保險料, 醫療費, 教育費, 住宅마련貯蓄 拂入金額, 寄附金 등을 대상으로 공제해준다. 다만, 特別控除을 신청하지 않거나 위의 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標準控除'라 하여 일괄적으로 소득을 공제해준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綜合所得稅 決定稅額을 산출하고 기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나. 稅率體系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체계를 따르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는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보다 정확히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득세율 체계가 超過累進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은 所得稅의 再分配 機能을 強化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는 10, 20, 30, 40%의 네 가지로 되어 있으며 세율 구간은 각각 1천만원 이하, 1~4천만원, 4~8천만원, 8천만원 초과이다.

다. 稅收 現況

所得稅 稅收은 1998년에 17조 1,94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그 가

운데 종합소득세는 3조 427억원이 징수되었다.

1996년과 1997년에는 소득세의 세수가 14조 7~8천억원 정도로 정체되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경기가 다소 침체되기 시작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綜合所得稅는 1996년 이래 1998년까지 징수실적이 비슷하여 경기여건이 좋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綜合所得稅의 稅收實績이 상대적으로 低潮한 데 비해 1998년에 所得稅 稅收가 크게 增加한 것은 1998년 동안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고 1997년말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되면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引上됨에 따라 所得稅 源泉分 稅收가 크게 增加한 데 따른 것이다.

〈表 II-1〉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收推移

(單位：億圓)

	所得稅			附加價値稅	
	所得稅 徵收實績	綜合所得稅		徵收分 稅收	歸屬分 稅收 (1,2期分)
		徵收分 稅收	歸屬分 決定稅收		
1980	6,614	2,599	n.a.	14,708	n.a.
1985	14,816	4,339	n.a.	29,012	29,705
1990	47,231	9,038	13,408.38	69,644	69,639
1991	64,594	13,596	16,110.32	82,526	87,714
1992	80,084	15,802	21,076.13	100,763	103,211
1993	94,629	22,506	26,700.18	116,875	119,342
1994	112,078	25,419	31,296.12	130,580	137,044
1995	136,182	29,154	34,780.45	146,369	155,972
1996	147,669	31,972	36,690.79	167,895	175,823
1997	148,679	30,655	40,800.24	194,880	193,839
1998	171,940	30,427	30,156.07	157,068	173,628

資料：財政經濟部，「財政金融統計」，各年度。
國稅廳，「國稅統計年報」，各年度。

2. 附加價值稅의 構造

본절에서는 附加價值稅의 課稅體系에 대해 살펴본다.

가. 課稅體系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의 기초생필품과, 정부 또는 정부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수돗물, 연탄 등은 면세되고 있으며, 消費地 課稅主義 原則(destin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고 있다.

나. 納稅義務者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一般課稅者와 特例課稅者로 대별되며, 특례과세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소액부징수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일반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을 控除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4,800만~1억 5천만원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에 근거하여 매출액 대비 2~5%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 2,400~4,800만원 사업자로서 업종에 따라 매출액 대비 2%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소액부징수자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

1997년 현재 附加價值稅의 納稅義務者는 293만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一般課稅者는 법인과 일반개인을 합하여 119만 7천명에 이르고, 簡易課稅者, 課稅特例者, 少額不徵收者를 합친 特例課稅者는

173만 3천명 정도이다.

1997년 현재 特例課稅者가 59.1%로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지만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수의 대부분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징수되고 있으며, 수적으로 크게 우세한 특례과세자로부터 징수되는 세수비중은 매우 낮다. 특례과세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수비중이 낮은 것은 이들의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는 데에도 일부 요인이 있지만 상당수의 特例課稅者들이 脫稅를 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특례과세자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와, 실제 규모는 일반과세자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해 특례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제도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두 가지 유형의 사업자 가운데 後者의 存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表 II-2〉 附加價值稅 課稅人員과 課標

(單位：人, 億원)

		1993	1994	1995	1996	1997
인원	법 인	117,374	133,911	150,023	512,169	192,333
	일 반	778,854	933,335	1,103,567	926,841	1,004,852
	간 이	-	-	-	273,197	490,034
	특 례	1,356,877	1,320,798	1,272,608	1,210,563	1,242,897
	(소액부징수)	(317,904)	(278,155)	(249,079)	(429,403)	(867,746)
	계	2,253,105	2,388,044	2,526,198	2,580,113	2,930,116
과표	법 인	4,522,435	5,402,193	6,635,042	7,671,075	8,816,471
	일 반	1,135,498	1,373,072	1,618,249	1,732,211	1,751,835
	간 이	-	-	-	53,382	132,579
	특 례	120,248	127,772	130,401	149,373	158,942
	계	5,778,181	6,903,037	8,383,692	9,606,041	10,859,827

資料：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는 곧 종합소득세의 탈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탈세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를 동일선상에 놓고 분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리에 따른 것이다.

다. 稅收 現況

1998년 현재 부가가치세 세수는 15조 7,069억원이 징수되어 소득세의 17조 1,940억원에 이어 국세 가운데 세수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세목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7년까지 만해도 단일세목으로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었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부가가치세는 단일세목으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綜合所得稅 脫漏所得·脫稅規模 및 附加價値稅 脫漏 課標 推定方法

가.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의 推定方法

所得의 脫漏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는 수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과,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실제보다 축소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事業所得者의 綜合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脫漏規模를 推定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로는 柳一鎬(1998)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사업소득자가 稅負擔 回避를 목적으로 세무당국에 所得을 過少하게 申告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소비합수의 추

정을 통해 所得의 過少申告率을 추정하고, 국민계정의 (個人)營業剩餘를 대리변수로 하여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과 脫稅規模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민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표 및 세수의 탈루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도시가계연보의 가구별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위의 연구와 유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실제소득과 탈루소득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납세자의 綜合所得稅 負擔을 추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득탈루 규모 및 탈세규모를 추정한다. 다만 소득 및 세부담의 추정과정과 방법이 위의 연구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圖 II-2] 참조).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탈루소득을 추정하기에 앞서 自營業者들의 實際所得을 推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득-소비간의 관계가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 가구의 所得函數를 추정하고(1단계) 근로자 가구의 所得-消費 關係가 자영업자 가구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한다(2단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기초로 각 귀속연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개별 가구별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누락시켜 綜合所得稅를 脫稅하므로 所得申告率(또는 所得捕捉率)이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각 개별납세자들은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소득 신고율을 결정하지만 불행히도 연구자에게는 그러한 소득신고율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 推定을 위해서는 所得申告率을 推定하여야 한다.

납세자들이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납세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期待效用을 極大化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²⁾.

$$\max_x U = p[y - t(y) - \pi\{t(y) - t(x)\}]^\rho + (1-p)[y - t(x)]^\rho$$

단, $\rho > 0, \rho \neq 1$.

$U, p, y, x, t(\cdot), \pi$ 는 각각 효용함수, 탈세가 적발될 확률, 실제소득, 신고소득, 소득세 산출함수, 가산세율이다. 각 납세자들은 소득이 y 로 주어진 상황에서 기대효용 U 를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申告所得 x 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所得申告率은 x/y 의 비율로 도출된다.

위와 같이 납세자의 효용함수를 설정하고 附錄 II에서 분석해본 결과,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p 의 값이 10% 미만이고 가산세율(π)이 2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rho > 1$ (위험선호)인 경우에는 실제소득과 신고소득간에 正(+)의 관계가 있고, $\rho < 1$ (위험기피)일 때 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소득이 쯤인 경우에 이미 소득신고율이 1이 됨으로써 의미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탈세가 적발될 확률과 가산세율이 모두 거의 1에 근접할 경우에만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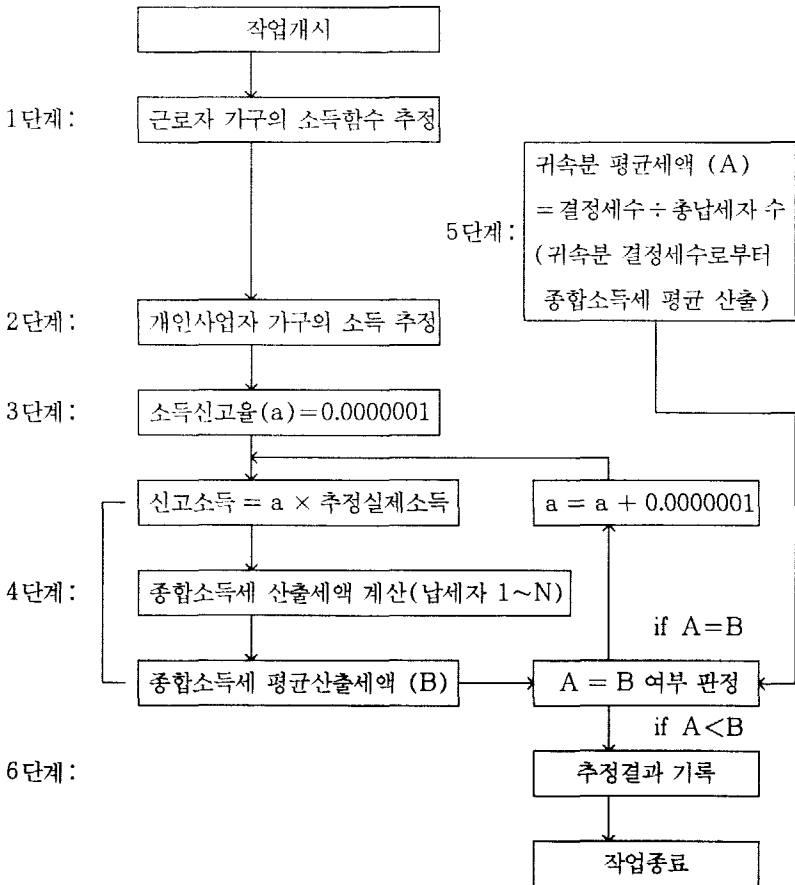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현실에서 탈세적발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탈세가 적발되어 加算稅 등을 부담하게 되는 脫稅費用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효용 극대화를 통한 소득신고율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현실에서는 탈세 적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탈세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附錄 II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영순(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비용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탈세에 따른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낮아 사실상 내부해가 도출되지 않거나 의미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탈세 적발 확률이나 가산세율 등 母數(parameter)가 현실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所得申告率의 決定過程을 무시하

[圖 II-2] 個人事業所得者의 脫漏所得 推定作業의 흐름도



기로 하고, 모든 綜合所得稅 納稅者들이 동일한 비율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신고율을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값으로 선정(3단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1인당 평균치를 산출한다. 소득신고율을 다른 값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평균산출액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4단계).

이와 별도로 국세통계연보로부터 각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총납세자 수로 나누어 納稅者 1인당 平均綜合所得稅 負擔額을 산출한다(5단계). 소득신고율별로 도시기계연보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종합소득세 평균산출세액 추정치와, 실제 결정세수 자료와 총납세자 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일치할 때까지 연산을 반복한다. 그러면 두 개의 산출세액이 일치하도록 해주는 所得申告率을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신고율 추정치로 하고 이때의 신고소득이 실제 신고소득에 대한 추정치로 한다(6단계).

종합소득세 납세자 1인당 산출세액을 산출할 때 徵收分 稅收를 사용하지 않고 決定稅收를 사용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징수분 세수는 徵收時點을 기준으로 통계를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징수분 세수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마땅히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脫稅와 滯納이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脫稅와 분명히 區別된다. 그런데 징수분 세수는 실제로 징수된 세수만을 통계로 잡고 있기 때문에 脫稅에 의한 것과 滯納 등에 의한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세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滯納分을 除外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세 결정세수는 체납분을 포함하여 신고된 소득으로부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한 것이므로 탈세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종합소득세의 탈세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탈루소득의 추정을 위해서는 徵收分 稅收보다는 決定稅收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 規模는, 實際所得과 申告所得의 差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별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연구에서는 실제소득 추정치와 신고소득 추정치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실제소득 추정치에서 신고소득 추정치의 점유비를 所得申告率이라고 정의하면, 1인당 탈루소득의 규모는 實際所得(推定值)에 所得脫漏率(=1-所得申告率)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총탈루소득의 규모는 1인당 평균탈루소득 추정치에 종합소득세 총납세자 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人當 平均 脫漏所得 &= 實際所得 推定值 \times 所得脫漏率 \quad (II-1) \\ &= 實際所得 推定值 \times (1 - 所得申告率) \end{aligned}$$

$$\begin{aligned} 總脫漏所得 規模 &= 1人當 平均 脫漏所得 \\ &\quad \times 綜合所得稅 總納稅者 數 \quad (II-2) \end{aligned}$$

綜合所得稅의 脫稅規模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所得捕捉率이 1, 즉 모든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시에 자신의 소득을 100% 보고한다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산출한 산출세액 평균과, 위의 소득신고율 추정치를 실제의 所得申告率이라고 가정하여 산출한 산출세액 평균(또는 결정세수 ÷ 총납세자 수)의 차이가 종합소득세 납세자 1인당 평균 탈세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이에

3) 이상과 같이 決定稅收를 기준으로 1인당 산출세액을 산출할 때 이것이 納稅者의 實際 綜合所得稅 負擔이 아님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결정세수는 체납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納稅義務者가 부담한 稅負擔을 알기 위해서는 徵收分 稅收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납세자 수를 곱하면 종합소득세의 총탈세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 1人當 平均 脫漏綜所稅 = (所得申告率=1)일 때의 \\
 & \quad 綜合所得稅 算出稅額 - (所得申告率=a)일 때의 \\
 & \quad 綜合所得稅 算出稅額 \qquad \qquad \qquad (II-3)
 \end{aligned}$$

$$\begin{aligned}
 & 總脫漏所得稅 規模 = 1人當 平均 脫漏綜所稅 \\
 & \quad \times 綜合所得稅 總納稅者 數 \qquad \qquad \qquad (II-4)
 \end{aligned}$$

나. 附加價値稅 脫漏課標 및 脫漏稅額의 推定方法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종합소득세가 탈세된 탈루소득은 곧 부가가치세의 탈세와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附加價値稅의 脫漏課標規模는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으로부터 직접 추정할 수 있다.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는 脫漏所得으로부터 탈루된 부가가치세 과표를 추정하고, 과세표준 추정치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의 탈루소득 규모 추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生産法과 消費法의 두 가지가 있다. 第三章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추정결과는 항상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綜合所得稅의 脫稅는 곧 附加價値稅의 脫稅를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부가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의 생산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脫漏分 附加價値의 比重을 산출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脫漏所得(또는 국민계정상 개인의 영업잉여)으로부터 脫漏分 附加價値를 환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生産法을 이용하여 탈루소득으로부터 附加價値稅가 脫漏된 附加價値를 推定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産業聯關分析의 消費法을 이용하여 附加價値稅課稅標準을 추정하면 부가가치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生産法과 동일한 推定結果를 얻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消費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과표를 추정하면 종합소득자의 탈루소득에서 脫漏分 民間消費支出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生産法을 이용하여 추정한 脫漏課稅 推定結果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루소득으로부터 지출된 민간소비지출에 대해 반드시 附加價値稅가 脫漏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生産法 대신 消費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일견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消費法에 의한 추정방법은 綜合所得稅 脫稅로부터 附加價値稅의 脫稅가 이루어지는 경로와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논리적으로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산업연관분석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生産法과 消費法에 의한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推定結果가 이론적·경험적으로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추정방법론상 소비법을 활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 착안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 오히려 생산법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

4) 綜合所得稅를 脫漏한 所得과 附加價値稅가 脫漏된 民間消費支出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업자가 지출한 소비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단계에서 탈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득세를 탈세하지 않은 납세자가 지출한 소비지출 가운데에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함으로써 성실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탈세되는 경우도 있다. 綜合所得稅 脫漏所得者의 消費支出分 가운데 附加價値稅가 탈세되지 않는 부분과, 成實申告者의 消費支出 가운데 附加價値稅가 脫稅된 부분은 一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어디에선가 사업자들이 탈세한 탈루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양자간의 과세신고자료를 일치시킨다는 현실적인 관행을 생각하면 좀더 이해가 용이하다.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소비법을 활용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가 탈루된 경우에는 탈루된 부가가치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이루어지지만 논리적으로 이를 우회하여 소비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민간 소비지출을 추정하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하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消費法을 채택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정은 총소비지출의 추정과 이 가운데 과세부문의 비중에 대한 추정 등 두 단계의 추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附加價値稅가 脫漏된 消費支出은 綜合所得稅 脫漏所得에 개인사업소득자들의 平均消費性向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는 平均消費性向을 媒介體로 소비지출과 소득간의 비례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표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총소비지출에서 과세부문의 점유비중을 곱하여 탈루과표를 추정할 수 있다. 탈세부문과 총소비지출 중 과세부문의 비중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세수추정방법 중 消費法을 통한 추정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⁵⁾.

물론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추정한 총소비지출에서 과세부문이 차지하는 점유비중이 탈세부문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은 두 영역 사이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부문에서는 附加價値稅를 脫稅할 誘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가정은 일견 무리한 가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附加價値稅 免稅部門에 종사하는 個人事業者라고 하더라도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5) 이에 대해서는 본장의 제3절과 第三章의 산업연관분석의 소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탈세의 유인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를 탈세하는 경우에는 비록 면세분 소비지출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을 축소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탈세부문에서도 여전히 소비지출에서 점유하는 과세부문의 비중은 제도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 탈루과표가 추정되면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별다른 추정과정 없이 脫漏課標推定値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⁶⁾.

위에서 논의한 부가가치세 탈루과표 및 탈세규모의 추정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附加價値稅 脫漏課標} &= \text{綜合所得稅 總脫漏所得} \\ &\times \text{個人事業者の 平均消費性向} \\ &\times \text{消費支出 對比 附加價値稅 課標의 比率} \end{aligned} \quad (\text{II}-5)$$

$$\text{附加價値稅 脫漏稅收 規模} = \text{附加價値稅 脫漏課標} \times 0.1 \quad (\text{II}-6)$$

4. 附加價値稅 稅收推計의 方法

가. 附加價値稅 稅收推計 方法의 種類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는 消費型으로 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을 공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附加價値稅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필요,

6) 다만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도입된 과세특례제 등으로 인해 세법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세수는 부가가치의 10%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과세특례자의 상당수가 課標의 隱蔽·縮小 등을 통해 僞裝課稅特例者로 잔류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과표비중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부가가치세수를 부가가치의 10%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생지원 등을 위해 면세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輸出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은 원칙적으로 民間消費와 일치하지만 현실에서는 면세, 특례과세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민간소비가 서로 불일치한다.

정부부문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附加價值稅의 課稅標準은 민간소비지출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⁷⁾.

附加價值稅는 원칙적으로 각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므로 부가가치의 합(GDP)이 과세표준의 시발점이 된다. 投資는 중간재로서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다음 거래단계에서 환급되며, 輸出에는 零稅率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投資와 輸出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과세표준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은 원론상 總附加價值와 輸入에서 投資와 輸出을 차감한 나머지와 일치하게 된다.

$$\text{附加價值稅 課稅標準} = \text{GDP} - \text{投資} + \text{輸入} - \text{輸出} \quad (\text{II}-7)$$

그러나 式 (II-7)과 같이 과세표준을 산출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면세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세부문의 부가가치를 차감하여야만 과세표준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課稅標準} &= \text{GDP(課稅分)} - \text{投資(課稅分)} + \text{輸入(課稅分)} \\ &\quad - \text{輸出(課稅分)} \end{aligned} \quad (\text{II}-8)$$

附加價值稅는 각 생산단계별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과세부문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한 투입분 가운데 면

7) 柳一鏞(1990) 참조.

세부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부문의 부가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부문의 투입분까지도 함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면세품이 중간투입재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累積效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은 과세부문의 부가가치에, 면세부문에서 과세부문으로 투입된 부가가치를 합산하여야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출시 면세부문을 공제하더라도 과세부문으로부터 면세부문에 판매된 거래분은 면세분에서 공제(또는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를 통해 면세부문에서 과세부문으로 이동한 투입분 또는 산출분에 대해 일부 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누적효과로 인한 세수증대 요인을 일부 상쇄시켜 준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면세부문에서 과세부문으로 이동한 부가가치 가운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순수한 면세부문의 부가가치만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또한 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 등을 통한 稅收 減少分의 比重도 미미하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附加價值稅 課稅標準 推定 方程式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begin{aligned} \text{課稅標準} = & \text{GDP(課稅分)} - \text{投資(課稅分)} + \text{輸入(課稅分)} \\ & - \text{輸出(課稅分)} + (\text{課稅部門으로 이동한 免稅部門의} \\ & \text{附加價值)} \end{aligned} \quad (\text{II-9})$$

式 (II-8)을 기본모형으로 이용하면 여러 가지 통계적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式 (II-9)를 回歸方程式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과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두 가지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나. 回歸分析을 이용한 附加價値稅 課稅標準(稅收) 推定方法

회귀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하고자 할 때 式 (II-9)에 나타난 각 변수에 대한 과세분의 비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편의상 각 변수별로 과세분의 비중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課稅部門으로 이동한 免稅部門의 附加價値’도 일정한 값을 중심으로 확률분포를 갖는다고 하면 별도의 정보 없이도 (평균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課稅部門으로 이동한 免稅部門의 附加價値} = a_0 + \varepsilon \quad (\text{II-10})$$

$$\text{GDP(課稅分)} = a_1 \cdot \text{GDP} \quad (\text{II-11})$$

$$\text{投資(課稅分)} = a_2 \cdot \text{投資} \quad (\text{II-12})$$

$$\text{輸入(課稅分)} = a_3 \cdot \text{輸入} \quad (\text{II-13})$$

$$\text{輸出(課稅分)} = a_4 \cdot \text{輸出} \quad (\text{II-14})$$

여기서 a_i ($i=0, 1, \dots, 4$)와 ε 은 각각 상수와 평균이 0인 확률 변수를 나타낸다. 분석의 편의상 각 변수의 계수가 탄력성의 의미를 지니도록 각 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式 (II-10)~式 (II-14)를 式 (II-9)에 대입하면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ln \text{課稅標準} &= a_0 + a_1 \cdot \ln \text{GDP} + a_2 \cdot \ln \text{投資} \\ &\quad + a_3 \cdot \ln \text{輸入} + a_4 \cdot \ln \text{輸出}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II-15})$$

종속변수를 $\ln(\text{稅收})$ 로 대체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이므로 a_i 를 $b_i = a_i - \ln 10$ 로 대체하면 부가가치세 세수함수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수함수 추정에 있어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시차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징수분 세수가 아닌 附加價值稅 1, 2期分 歸屬分 稅收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 달리 징수분 세수 대신 歸屬分 稅收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징수분 세수를 사용한 종전의 연구에서 세수예측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비현실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세수예측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징수되며 징수시점은 과세기간이 경과한 익월이기 때문에 경제여건과 실제 징수되는 시점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징수분 세수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시차문제로 인한 분석오차가 크게 증폭되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징수분 세수 대신 귀속분 세수를 사용하여 시차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 産業聯關表를 이용한 附加價值稅 課稅標準 推定方法⁸⁾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즉 민간소비지출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하나는 總需要函數를 기초로 總附加價值에서 중간단계의 부가가치와 수출, 설비투자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방법(生産法)이고, 다른 하나는 民間消費支出로부터 직접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消費法)이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례과세제도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암묵적으로 평균부가가치율을 20%로 가정하여 매출액 대비 2%의 세

8) 본절에서 生産法 및 消費法에 의한 附加價值稅 課稅標準 推定方法에 대해서는 Pellechio and Hill(1996)의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가가치율이 2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세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모두 일반과세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보다 작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수를 추정하게 되면 실제세수보다 다소 세수를 과다하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현재 특례과세자로 분류되고 있는 소규모사업자의 대부분이 課標의 隱蔽·縮小를 통해 실제로는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례과세자로 잔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탈세로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특례과세자의 비중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의한 세수의 과다추정규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례과세 적용에 따른 稅收의 過多推定 可能性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生産法에 의한 附加價值稅 課標 推定方法

生産法에 따라 總需要函數로부터 附加價值稅 課稅標準을 산출하는 방정식은 式 (II-9)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text{課稅標準} &= (\text{總附加價值} - \text{免稅部門 附加價值}) \\ &\quad - (\text{投資} - \text{免稅部門 投資}) + (\text{總輸入} \\ &\quad - \text{免稅部門 輸入}) - (\text{總輸出} - \text{免稅部門 輸出}) \\ &\quad + (\text{課稅部門으로 이동한 免稅部門의 附加價值}) \end{aligned} \tag{II-16}$$

2) 消費法에 의한 附加價值稅 課標 推定方法

消費法에서는 民間消費支出로부터 免稅分을 직접 차감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정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text{課稅標準} = \text{消費支出(課稅分)} = \text{消費支出} - \text{免稅部門 消費支出}$$

중간 단계의 附加價值의 總합이 최종생산물의 가치와 일치하므로,

消費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최종소비지출과 일치한다. 다만 부문별로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

면세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경우에는 이전 단계에서 과세부문으로부터 구입한 부분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지만 면세품의 특성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비록 면세부문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부문으로부터 구입한 總附加價値에 대해서는 이미 附加價値稅를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어야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비법에 의한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推定 方程式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text{課稅標準} = & (\text{消費} - \text{免稅部門 消費}) & (\text{II}-17) \\ & + (\text{免稅部門으로 이동한 課稅部門의 附加價値}) \end{aligned}$$

3) 生産法과 消費法의 比較

消費法에 의한 과세표준 추정식은 生産法에 의한 것과 이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⁹⁾. 다만 산업연관 분석시 투입산출표에 나타나지 않은 외부의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표준 추정결과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生産法과 消費法 각각에 대한 가산 또는 차감항목이 서로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 추정치가 서로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과세표준 추정시 투입산출표상의 산업분류와, 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부문 또는 면세부문간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산업부문 가운데

9) 生産法과 消費法에 의한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推定方程式이 이론적으로 동일함에 대한 증명은 Pellechio and Hill(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에는 과세부문과 면세부문이 하나로 분류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만약 免稅部門이나 課稅部門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위의 두 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추정치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附加價値稅 免稅部門 또는 課稅部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하면 방법론상의 공제 항목이나 가산항목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추정치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免稅 또는 課稅部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면세 및 과세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산업의 경우 각각에 대한 비중이나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4) 免稅部門과 課稅部門의 分類

1995년 투입산출표는 산업을 28부문, 77부문, 168부문, 402부문으로 분류한 네 가지 모형이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입산출표의 免稅部門과 課稅部門에 대한 分類가 선행되어야 한다.

담배는 1999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현재 과세되고 있으나 1995년 당시에는 담배가 면세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기초한 면세부문과 과세부문 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은 附錄 V 를 참조하기 바란다.

라. 分析資料

회귀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984~1994년의 上·下半期別 經常 GDP, 設備投資, 輸出, 輸入 및 附加價値稅 1, 2期分 實稅收이다. 그리고 產業聯關分析에 있어서는 1995년 投入產出表이다.

회귀분석시에 1984~1994년 자료로 범위를 한정 한 것은, 첫째 1984년 이전의 부가가치세 1, 2기분 세수에 대한 통계가 없어 그

이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199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과의 비교를 위해서이다. 참고적으로 附錄 IV에서는 1998년까지의 세수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보고하였다.

5. 稅收 및 脫稅效果 分析方法

綜合所得稅의 稅收와 稅負擔의 推定 및 脫漏所得과 脫稅規模의 推定, 그리고 附加價値稅의 脫漏課標와 脫稅規模 推定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자영업자의 所得申告率 推定이다. 이는 세부담 분포 및 총세수, 탈루소득 및 탈세규모 추정과정이 모두 所得申告率 推定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는 직접적으로 所得申告率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납세의식이나 관련 제도의 개편, 징세당국의 과표양성화 의지 등은 소득신고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 제도 개편, 징세당국의 과표양성화 노력 등이 변함에 따른 세수 및 탈세규모 변화 효과에 대한 추정은 소득신고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의미한다.

기존의 세수추계 방법으로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한 일반적인 세수추계에 그쳐 탈세비율의 변화에 따른 세수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곧 稅收推計의 正確性 下落을 의미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신고율의 추정을 통해 일반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이외의 요인에 의한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탈루소득(또는 탈루과표)과 탈세규모 추정을 위해 명시적으로 微視分析 및 巨視分析을 함께 채택하고 있고 세수추계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여타의 분석방법에 비해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또한 총체적인 세수효과는 물론이고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의 변화효과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

6. 諸般 假定에 대한 留意事項

본 연구에서는 脫漏所得과 脫稅規模 추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아래에 기술한 세 가치를 기본가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세 가치 기본가정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적이지 않다면 추정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基本假定:

- ① 납세의무자(개인사업자)는 綜合所得稅 申告와 附加價値稅 申告時 綜合所得稅 脫漏所得과 附加價値稅 脫漏課標가 서로 대응되도록 납세신고서의 내용이 모순되지 않게 신고한다.
- ②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의 所得-消費 관계는 同一하다.
- ③ 모든 綜合所得稅 納稅者의 所得申告率이 同一하다.

위의 가정 가운데 가정 ①은 현실성 측면에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동일 신고자가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 申告時에 신고자료가 대응되지 않도록 신고한다면 징세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이 쉽게 파악되므로 탈세가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두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치시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가정 ②와 가정 ③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10)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의 변화효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분석과정중의 부산물로서 추정된다.

가정 ②의 경우 실제로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の 所得—消費간의 함수관계가 일치하는지를 선형적으로 알 수 없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재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축적하게 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 수준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높아 고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으며,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저소득층의 소비성향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성향이 근로자 가구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의 第三章에서 추정하였듯이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の 所得—消費 關係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추정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근로자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약 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消費性向이 낮다면 실제의 자영업자 소득은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더 높을 것이다. 반면에 세무조사를 염려하여 근로자보다 소비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라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の 所得—消費 관계는 평균적으로 동일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③과 관련하여서는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세당국에 의해 脫稅가 포착될 가능성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고, 따라서 과세당국에 의해 脫稅가 포착됨에 따른 탈세의 기회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탈세에 따른 이익의 절대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탈세의 유혹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전자의 경우가 현실적이라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후자가 현실적

이라면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 ②와 가정 ③에 대해서는 가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가정에 대한 代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②와 ③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및 탈세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都市家計年報資料의 原始資料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附錄 III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7. 既存 研究와의 研究方法論 比較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의 탈세규모 추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탈루소득의 절대규모에 대한 추정이 분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柳一鎬(1998)에서는 소비함수 추정을 통해 所得의 過少申告率을 추정하는 데에는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탈루소득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영업잉여를 신고소득규모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한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柳一鎬(1998)와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합소득세의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다. 柳一鎬(1998)에서는 綜合所得稅 脫稅規模 추정시에 종합소득세의 세수탄력성이 1이라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자의 직관으로는 그러한 가정이 기존의 세수함수 추정을 통한 종합소득세의 세수탄력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논리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다. 즉, 稅收函數分析을 통한 綜合所得稅 稅收의 所得彈力性은 限界所得稅率에 의존

한다. 따라서 탈루된 소득이 모두 전액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별개의 납세자로부터 발생하였고 기존의 납세자는 모두 성실신고하였으며, 소득을 탈루한 사람들이 성실신고한 납세자와 동일한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연구와 같이 所得稅收의 所得彈力性을 1로 하여도 脫稅規模 推定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이는 불성실신고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성실신고자와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납세자들이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소득세수의 所得彈力性이 1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分析誤差를 크게 增幅시킨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이 기존의 불성실신고 의식을 불식시키고 모두 성실신고한다면 累進稅率 체계로 인해 이들은 종전보다 더 높은 限界所得稅率을 적용받게 되어 所得彈力性이 1을 超過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의 연구에서는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이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所得彈力性을 1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柳一鎬의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소득과소신고율을 추정하여 종합소득세의 탈세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만큼, 위의 두 가지 경우 가운데 後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탄력성을 단순히 1로 가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구에서는 탈세규모의 평균치를 추정하였다기보다는 脫稅規模의 最小値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收推計

본장에서는 개인사업소득자의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收를 推定한다. 綜合所得稅 稅收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미시적 방법을 이용하여 事業所得者의 소득세 추정을 통해 개인사업소득자들의 實際所得을 추정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수와, 추정소득을 기초로 추정한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個人事業所得者의 綜合所得稅 負擔을 推定한다. 그리고 附加價値稅 稅收는 回歸分析과 産業聯關分析을 통해 추정한다.

1. 綜合所得稅의 稅收推定

가. 個人事業所得者의 所得推定

1) 概 要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에는 個人事業所得者(또는 自營業者)의 所得 관련 사항이 보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실제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

1)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자영업 종사자의 수가 1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각 가구의 종합소득과 자영업자 개인의 소득은 같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반면에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과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은 혼동하여 쓰더라도 결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사용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個人事業者들은 대부분 所得을 過少申告하는 경향이 있어 여타 자료에서와 같이 보고된 소득은 실제소득과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지출은 소득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勤勞所得者와 事業所得者를 불문하고 所得-消費의 함수관계는 대체로 安定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근로소득자(가구)와 사업소득자(가구)의 소득-소비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소득을 과소보고할 유인이 별로 없다. 따라서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에 나타난 근로소득자의 소득-소비관계를 파악하면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근로소득자 가구의 소득-소비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비함수의 형태, 즉 式(III-1)의 함수관계와 달리 式(III-2)와 같은 逆函數의 형태로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다. 물론 式(III-1)과 式(III-2)의 형태로 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하면 所得彈力性和 逆彈力性 推定値는 符號는 같지만 추정치는 반드시 逆의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所得彈力性 = 1/逆彈力性'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回歸分析이 確定的(deterministic) 관계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수학적 방정식이 아니라 確率的(stochastic)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所得과 消費를 각각 Y 와 C 라 하자.

$$\begin{aligned} \ln(\text{消費}) = \ln(C) &= \text{常數} + \text{所得彈力性} \times \ln(\text{所得}) + X' \beta + \text{誤差項} \\ &= \alpha_0 + \alpha_1 \times \ln(Y) + X' \alpha_2 + \epsilon \end{aligned} \quad (\text{III-1})$$

$$\begin{aligned} \ln(\text{所得}) = \ln(Y) &= \text{常數} + \text{逆彈力性} \times \ln(\text{消費}) + X' \gamma + \text{誤差項} \\ &= \beta_0 + \beta_1 \times \ln(C) + X' \beta_2 + u \end{aligned} \quad (\text{III-2})$$

단, α_i 와 $\beta_i (i=0, 1, 2)$ 는 상수이고, $\varepsilon \equiv \ln(C) - E[\ln(C) | Y, X]$ 와 $u \equiv \ln(Y) - E[\ln(Y) | C, X]$ 는 오차항이다. 이때 조건부 기대치는 각각 $E[\ln(C) | Y, X] \equiv \alpha_0 + \alpha_1 \times \ln(Y) + X\alpha_2$, $E[\ln(Y) | C, X] \equiv \beta_0 + \beta_1 \times \ln(C) + X\beta_2$ 로 정의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가운데 C 와 Y 를 맞바꾸는 경우에 각 변수의 계수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原回歸方程式으로 볼 수 있는 式 (III-1)과 逆回歸方程式으로 볼 수 있는 式 (III-2)를 성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각각의 오차항과 각 추정식의 설명변수간에 垂直性(orthogonality)條件이 충족되느냐 또는 설명변수에 대한 오차항의 기대치 $E(\varepsilon | Y, X) = 0$ 과 $E(u | C, X) = 0$ 의 조건이 충족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消費 C 와 所得 Y 간의 관계가 수학적 등식관계가 아니라 통계적 결합 확률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성립하는 관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의 두 식이 수학적 등식으로 성립한다면 逆回歸方程式을 나타내는 式 (III-2)의 경우에는 오차항 u 와 설명변수 C 간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하게 되어 단순최소자승법 등으로는 추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E(u | C, X)$ 가 C 와 X 의 함수(예컨대 $g(C, X)$)로 표현되기 때문에 $E[\ln(Y)' u | C, X] = \ln(Y)' E(u | C, X) = \ln(Y)' g(C, X) \neq 0$ (또는 상수)이 되어 단순최소자승법의 조건을 위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因果關係(causality)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으나, 회귀 분석이 추구하는 것은 각 변수간의 결합분포에 기초한 조건부 기대치를 추정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즉, 두 개의 확률변수 조합 (Z_1, Z_2) 가 결합분포 $f(Z_1, Z_2)$ 를 가진다고 할 때, 式 (III-3)과 式 (III-4)와 같이 $E(Z_1 | Z_1)$ 와 $E(Z_2 | Z_1)$ 이 모두 다 잘 정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Z_1, Z_2) 가 결합정규분포를 가진다고 할 때 $E(Z_1 | Z_2)$ 와 $E(Z_2 | Z_1)$ 은 모두 선형으로 정의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위에서와 같이 所得彈力性과 逆彈力性 추정치가 역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은 $E(Z_1 | Z_2)$ 가 $E(Z_2 | Z_1)$ 의 역수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逆回歸分析(reverse regression)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소비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²⁾.

$$\begin{aligned} E(Z_1 | Z_2) &= \int_{-\infty}^{+\infty} Z_1 f_{z_1|z_2}(Z_1 | Z_2) dZ_1 \\ &= \int_{-\infty}^{+\infty} Z_1 \frac{f(Z_1, Z_2)}{f(Z_2)} dZ_1 \end{aligned} \quad (\text{III-3})$$

$$\begin{aligned} E(Z_2 | Z_1) &= \int_{-\infty}^{+\infty} Z_2 f_{z_2|z_1}(Z_2 | Z_1) dZ_2 \\ &= \int_{-\infty}^{+\infty} Z_2 \frac{f(Z_1, Z_2)}{f(Z_1)} dZ_2 \end{aligned} \quad (\text{III-4})$$

2) 所得函數의 推定結果

가) 說明變數의 選定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所得-消費關係를 所得函數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리고 勤勞所得者의 所得函數 추정결과는 〈表 III-1〉에 보고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로는 소비지출 수준과 가구원의 수, 가구의 학력더미, 연령 등을 사용하였다. 다만 가구의 연령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계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家口員 數의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판단이 쉽지 않았다. 즉, 1994년

2) 일반적으로 豫測模型에서는 因果關係(causality)에 따른 모형설정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두 변수간의 조건부 분포함수에 대해 사후적인 검증 또는 사후적으로 분포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실현된 분포를 기초로 하므로 인과관계에 따른 모형설정의 중요성이 작아짐에 유의하기 바란다.

과 1998년의 경우에는 계수 추정치의 t 값이 상당히 낮아 가구원 수가 소득을 설명하는 데 별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1995~1997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중 1994년의 경우에는, 비록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이 높기는 하지만, 유의수준 10%에서 가구원 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所得函數 추정결과에서는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원 수도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學歷의 差異가 소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學歷別로 수준더미(level dummy)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곧 각 학력수준별로 Y 축의 절편이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학력더미에서는 無學더미를 제외하였다. 이는 무학더미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면 常數項과 完全多重共線性(perfect multicollinearity) 문제가 초래되어 회귀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無學인 경우에는 상수항이 곧 기초소득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Y 축의 절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타 학력 소유자의 경우에는 상수항과 해당 학력더미의 계수치가 Y 축의 절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推定結果

먼저 消費支出이 所得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비지출이 1% 증가할 때 소득은 최대 0.84%(1994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正(+)^의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1997년에는 계수의 값이 다소 감소하여 1997년에는 0.71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0.74로 소폭 반등하였다.

〈表 III-1〉 勤勞所得者の 所得函數 推定結果

說明變數	1994年資料使用時		1995年資料使用時	
	推定値	t-값	推定値	t-값
常數項	2.69646	11.80934	3.04763	13.58414
消費支出水準	0.84102	59.08263	0.81418	58.87488
家口員數	0.03483	1.78542	0.08869	4.80334
教育水準 더미(初等學敎)	0.12810	2.34237	0.14479	2.55669
教育水準 더미(中學校)	0.14673	2.71815	0.18719	3.33137
教育水準 더미(高等學校)	0.17294	3.28846	0.22794	4.13935
教育水準 더미(專門大學)	0.20943	3.70443	0.29654	5.11161
教育水準 더미(大學校)	0.21276	3.94777	0.29909	5.33739
教育水準 더미(大學院)	0.34166	5.63891	0.37463	6.09588
R^2	0.53148		0.54196	
$s^2(s)$	0.09592(0.30970)		0.08226(0.28681)	
說明變數	1996年資料使用時		1997年資料使用時	
	推定値	t-값	推定値	t-값
常數項	4.08984	23.67925	4.93334	24.67428
消費支出水準	0.76708	73.12288	0.71176	58.85559
家口員數	0.05664	4.01059	0.03315	1.96170
教育水準 더미(初等學敎)	0.03104	0.77233	0.18128	3.07319
教育水準 더미(中學校)	0.04539	1.14078	0.19624	3.35748
教育水準 더미(高等學校)	0.09613	2.46971	0.27064	4.68938
教育水準 더미(專門大學)	0.13558	3.28881	0.30169	5.04504
教育水準 더미(大學校)	0.16453	4.14882	0.35211	6.03468
教育水準 더미(大學院)	0.25515	5.82459	0.41355	6.69431
R^2	0.69431		0.59480	
$s^2(s)$	0.03364(0.18342)		0.04573(0.21384)	

〈表 III-1〉의 계속

說明 變 數	1998年 資料 使用時	
	推定值	t-값
常數項	4.48124	21.13610
消費支出 水準	0.73613	56.33096
家口員 數	0.01420	0.75528
教育水準 더미(初等學敎)	0.28167	4.45053
教育水準 더미(中學校)	0.20766	3.34671
教育水準 더미(高等學校)	0.33151	5.46612
教育水準 더미(專門大學)	0.37883	6.02355
教育水準 더미(大學校)	0.42722	6.96936
教育水準 더미(大學院)	0.48539	7.36544
R^2	0.58137	
$s^2(s)$	0.04313(0.21767)	

註: 모두 단순회귀자승법으로 추정하였음.

흔히 限界消費性向이 1 이하인 경우가 많고 또한 소득이 증가할 수록 소비성향이 체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함수 추정식에서 소비가 1% 증가할 때 소득증가율이 1%를 하회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회귀분석시에 소득탄력성과 역탄력성간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소득함수가 확률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비지출이 1% 증가할 때 소득이 0.71~0.84%의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을 설명해주는 변수로서 소비지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더 있기 때문이다. 즉, 가구원 수가 증가하거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家口員 數가 增加할수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就業者의 數가 增加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家口員 數가 증가할수록 所得水準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學歷水準이 높아질수록 고소득 식중에 취업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학력더미로 갈수록 계수추정치 절댓값이 더 커지는 것이 이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나. 綜合所得稅 負擔 및 所得申告率의 推定結果

본절에서 所得稅 負擔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成明宰(1997B)와 成明宰·全瑛俊(1998)의 연구에서 수행한 세수추계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본 연구의 세수추계 방법과 위의 연구간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차이는, 상기의 연구에서는 納稅申告資料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都市家計年報의 原始資料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는, 종합소득세 세수추계 과정에서 상기의 연구는 신고소득을 바탕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실제소득으로부터 所得申告率을 推定한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세 신고자료 대신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이미 신고된 소득자료만이 이용가능할 뿐, 탈루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소득 추정을 통해 탈루소득 및 탈세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本項에서 산출한 종합소득세 부담은, 실제의 세부담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소득을 기초로 산출한 결정세액이 모두 징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도출한 것이다. 이는 滯納이나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의 이유로 所得稅를 부담하지 않은 것과 脫稅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가구당 종합소득세 부담액 평균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수를 총납세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수추계 과정

을 거치지 않고 국세통계연보에 기재된 자료로부터 직접 산출하였다. 다만 自營業者의 所得申告率을 推定하는 것이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 推定에 關鍵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所得申告率 推定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결정세수 대신 징수분 세수를 분자로 사용하여 납세자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한다면 탈루소득 및 탈세규모 추정이 어려워질 것이며 소득신고율 추정결과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방법으로 추정한 가구당 종합소득세 부담 평균은 1994년이래 1997년까지 93만 3천원 수준에서 118만 7천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약 86만 3천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한 것은 경기급락에 따른 사업소득이 크게 부진해진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자영업자의 所得申告率은 1994~1998년 기간 동안 각각 55.61%, 50.79%, 47.68%, 53.79%, 52.35%로 추정되었다. 1994년 이래 1996년까지 자영업자들의 所得申告率은 下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에는 다시 反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所得申告率이 다소 下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매우 작아 1998년에 소득신고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8년의 소득신고율 수준은 1997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7년에는 1996년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의 총소득이 감소하였고 종합소득세 체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表 III-2〉 綜合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自營業者 家口)

(單位: 원, %, 百萬元, 人)

	1994	1995	1996	1997	1998
家口當 總所得 平均	25,437,276	29,807,513	32,827,897	29,018,360	25,744,194
綜合所得 平均(實際所得)	19,367,407	22,647,584	25,399,041	26,154,674	23,460,560
(申告所得)	10,769,539	11,501,892	12,109,250	14,067,387	12,282,373
所得申告率	55.61	50.79	47.68	53.79	52.35
綜合所得稅 總納稅者 數	3,353,842	3,507,003	3,657,253	3,437,818	3,495,183
綜合所得稅 決定稅額 平均	3,129,612	3,478,045	3,669,079	4,080,024	3,015,607
納稅者 1人當 決定稅額	933,142	991,743	1,003,234	1,186,806	862,789

註: 1. 가구당 총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所得總數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2. 綜合所得(實際所得)은 자영업자 가구의 총소득 추정치로부터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공제한 금액임.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은 근로자 가구의 총소득 대비 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을 사용하였음.

3. 綜合所得(申告소득)은 綜合所得(實際所得) 推定值에 所得申告率 推定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평균임.

4. 종합소득세 총납세자 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추계과세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임. 추계과세자 가운데에는 免稅者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

2. 附加價值稅 稅收推定

가.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值稅 稅收推定

본절에서는 式 (II-15)를 기본 回歸方程式으로 하여 모두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單純最小自乘法(이하에서 OLS로 지칭함)과 코크레인-오컷(이하에서 C-O로 지칭함), 共積分(CCR; canonical cointegrating regression) 등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式 (II-15)에 나타난 GDP, 輸入, 設備投資, 輸出의 네 가지 이외에 時間趨勢와 상반기 더미를 조합하였다. 前者의 경우에는 세 가지 분석방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난 반면에 後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상관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表 III-3〉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值稅 稅收推定 結果
(1984~1994年 資料)

(單位: 億원)

說明變數	推定方法		코크레인-오컷(C-O)		共積分(CCR)		
	OLS ₁	OLS ₂	C-O ₁	C-O ₂	CCR ₁	CCR ₂	
常數	-2.325 (-1.958)	-6.163 (-17.246)	-1.750 (-2.236)	-5.670 (-14.147)	-0.586 (-0.251)	-6.628 (-18.872)	
時間趨勢	0.022 (3.328)	- -	0.025 (5.909)	- -	0.032 (2.498)	- -	
ln經常GDP	1.331 (15.989)	1.385 (13.441)	1.386 (23.979)	1.357 (16.997)	1.148 (5.494)	1.400 (9.889)	
ln經常輸入	0.544 (5.477)	0.737 (7.259)	0.413 (5.856)	0.628 (6.166)	0.583 (7.553)	0.783 (6.701)	
ln經常設備投資	-0.437 (-7.548)	-0.394 (-5.534)	-0.434 (-12.239)	-0.234 (-2.898)	-0.429 (-6.662)	-0.475 (-6.385)	
ln經常輸出	-0.595 (-7.848)	-0.556 (-5.877)	-0.579 (-12.372)	-0.607 (-5.471)	-0.592 (-9.312)	-0.504 (-5.907)	
R ² [調整된 R ²]	0.999 [0.998]	0.998 [0.997]	0.999 [0.999]	0.999 [0.999]	- -	- -	
더빈-왓슨 統計值	1.788	1.554	2.354	1.524	-	-	
MMSE	0.039	0.066	0.046	0.086	0.058	0.079	
LAD	1.608	2.165	1.547	2.338	1.952	2.371	
	實績	推定值	推定值	推定值	推定值	推定值	推定值
1995 上半期	70,487	72,545	73,848	71,391	71,661	74,587	76,037
1995 下半期	82,485	88,969	91,232	88,304	87,658	89,615	94,682
1996 上半期	79,329	85,806	86,711	84,403	82,839	88,812	90,171
1996 下半期	96,494	106,835	109,907	105,042	105,205	108,937	114,238
1997 上半期	89,337	98,519	98,865	96,472	92,467	103,360	104,129
1997 下半期	104,502	119,804	121,529	117,938	109,335	123,487	131,233
1998 上半期	80,947	95,114	93,466	93,756	79,136	101,509	104,943
1998 下半期	92,681	115,987	107,483	117,537	91,952	121,956	119,706

註: () 안은 t-값임.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또는 稅收)을 산출하는 방정식을 기본 회귀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각 설명변수의 계수 추정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더빈-왓슨 통계치를 고려할 때 추정방법과 관련해서는 OLS로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CCR의 경우에는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적정성을 검정하여야 하나 검정결과가 檢定統計量의 종류 및 시차변수의 차수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본고에서는 CCR 추정결과도 함께 보고하였다.

모형의 예측력을 사전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모형의 추정력(fitting)을 간접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평균자승오차법(MSE; mean squared error)과 절대편차법(absolute deviation)을 응용한 MMSE와 LAD를 사용하였다³⁾.

OLS 및 CCR기법으로 추정한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에서 MMSE와 LAD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OLS₁이다. OLS를 기준으로 시간추세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변수의 계수를 합한 총체적 탄력성은 0.843으로 나타났다. 물론 時間趨勢의 계수가 陽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의 시계열적 탄력성은 이보다 클 것이다. 실제로 시간추세를 사용하지 않은 OLS₂의 경우에는 그 값이 1.172로 나타난 것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産業聯關分析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定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生産法과 消費法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치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면세부문과 과세부문에 대한 미조정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MMSE와 LAD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오차가 작고, 절대값이 클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柳一鎬(1990), 成明宰(1995, 1997, 1998A), 成明宰·玄鎭權(199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995년 현재 GDP는 375조 8,029억원으로 28부문, 77부문, 168부문, 402부문의 네 가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산업분류에 있어 세분류와 대분류 사이에는 과세표준 추정치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분류시에는 동일 산업 내에 免稅部門과 課稅部門이 混在되어 있는 경우가 세분류한 경우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문을 과세부문과 면세부문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추정치가 차이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表 III-4〉 投入產出表를 이용한 附加價値稅 稅收推計

(單位: 億원)

生産法(Production Method)	28部門	77部門	168部門	402部門
附加價値 計	3,758,029.32	3,758,029.32	3,758,029.32	3,758,029.32
免稅分 附加價値 (-)	-983,084.13	-792,336.43	-1,037,441.22	-1,327,314.56
投資 (-)	-1,489,712.59	-1,489,712.59	-1,489,712.59	-1,489,712.59
免稅分 投資	12,185.95	12,402.50	11,585.61	11,896.50
總輸入	1,277,428.60	1,277,428.60	1,277,428.60	1,277,428.60
免稅分 輸入 (-)	-78,344.70	-97,459.61	-87,603.24	-113,759.44
總輸出 (-)	-1,138,523.82	-1,138,523.82	-1,138,523.82	-1,138,523.82
免稅分 輸出	17,296.89	15,625.80	19,488.20	87,657.58
免稅→課稅 移轉 總算出	519,847.90	324,983.84	474,075.86	499,073.33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1,895,123.42	1,870,437.61	1,787,326.72	1,564,774.92
消費法(Consumption Method)	28部門	77部門	168部門	402部門
消費	2,407,221.51	2,407,221.51	2,407,221.51	2,407,221.51
免稅分 消費 (-)	-865,060.70	-865,513.46	-992,261.59	-1,355,757.30
課稅→免稅 移轉 總算出	352,962.61	328,729.56	372,366.80	513,310.71
附加價値稅 課稅標準	1,895,123.42	1,870,437.61	1,787,326.72	1,564,774.92

註: (-) 는 차감항목이고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것은 가산항목임.

본고에서는 과세부문과 면세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산업 전체를 과세부문으로 분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대분류일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추정되었으며, 반대로 세분류일수록 과세표준이 작게 추정되었다.

1995년의 投入產出表를 이용하여 199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정한 결과 대분류인 28부문의 경우에는 189조 5천억원, 중분류인 77부분과 168부문의 경우에는 각각 187조원과 178조 7천억원, 세분류인 402부문의 경우에는 156조 5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 稅率은 10%이므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1995년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과세표준 추정치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따라서 199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세수추정치는 각각 18조 9,500억원, 18조 7천억원, 17조 9천억원, 15조 6천억원 정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을 세분류할수록 免稅部門과 課稅部門이 혼재되어 있는 부문의 附加價値 比重이 減少하고, 또한 두 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부문을 모두 과세부문으로 처리함에 따른 課標의 過大 評價 규모가 縮小되기 때문에 細分類일수록 課標推定値가 縮小되는 모습을 보였다. 402부문의 경우에는 과세부문과 면세부문이 혼재된 부문 가운데 과세부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부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부문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추정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세수는 다소 과소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제로 실현된 결정세액에서 세수추정치를 차감한 분석오차가 陰의 값을 가질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稅收實績과의 比較

1995년에 실제로 징수된 徵收分 稅收는 1995년 歸屬分 稅收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分析誤差, 脫稅, 귀속연도와 징수기간 간의 時點差異에 의한 세수차이 등 세 가지 요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징수분 세수와 세수추정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

반면에 1, 2기분 부가가치세 실세수와 세수추정치간의 차이는 分析誤差와 脫稅의 두 가지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앞에서 회귀분석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된 부가가치세 세수는 귀속분 세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세수의 비교도 귀속분 세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回歸方程式을 이용한 1995년도 귀속분 세수추정치는 OLS_i과 CCR_i의 경우에서 각각 16조 1,514억원과 16조 4,202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產業聯關分析을 통해서는 부문 분류에 따라 세수가 각각 18조 9,512억원, 18조 7,044억원, 17조 8,733억원, 15조 6,47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歸屬分 附加價值稅 稅收이라고 볼 수 있는 1995년의 1, 2期分 세수의 합은 15조 2,972억원이다⁴⁾. 위의 추정치는 모두 실적치를 8,542억원, 1조 1,230억원, 3조 6,540억원, 3조 4,072억원, 2조 5,761억원, 3,505억원씩 초과하고 있다.

402부문 또는 168부문으로 분류한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추정한 199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세수는 각각 15조 6,477억원과 17조 8,733억원이며, 1995년 1, 2기분 실세수는 15조 2,972억원이다.

產業聯關分析을 이용하여 추정한 귀속분 세수추정치와 1,2기분 세수실적과의 차이는 세분류보다 중분류, 중분류보다 대분류의 경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課稅部門과 免稅部門이 混在된 부문을

4) 1995년의 徵收分 附加價值稅收은 14조 6,369억원이다.

課稅部門으로 간주함에 따른 것이다. 세분류의 경우에는 그러한 오차에 의한 과표 또는 세수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그만큼 축소되므로 대분류 및 중분류의 경우보다 세분류를 통한 과표추정이 보다 실제의 값에 근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402부문을 기준으로 할 경우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1995년 귀속분 세수와 1, 2기분 실세수간의 차이는 3,505억원으로, 1, 2기분 실세수 대비 2.3% 정도의 차이를 보여 탈세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68부문을 기준으로 할 경우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1995년 귀속분 세수와 1, 2기분 실세수간의 차이는 2조 5,761억원으로 그 차이가 1, 2기분 세수의 16.8% 정도에 이른다.

産業聯關分析이나 回歸分析 모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統計的 誤差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부가가치세의 세수추정치와 세수실적간의 차이는 통계적 분석에 따른 統計的 誤差와 脫稅, 滯納 등에 의한 稅收差異 등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稅收推定値와 實績値間의 差異를 모두 脫稅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表 III-5〉 稅收推定値의 比較

(單位: 億圓)

	實績	回歸分析에 의한 稅收推定値						産業聯關分析에 의한 稅收推定値			
		OLS_1	OLS_2	$C-O_1$	$C-O_2$	CCR_1	CCR_2	28 ¹⁾	77 ¹⁾	168 ¹⁾	402 ¹⁾
1995 ^a	152,972	161,514	165,080	159,695	158,319	164,202	170,719	189,512	187,044	178,733	156,477
	-	(8,542)	(12,108)	(6,723)	(5,347)	(11,230)	(17,747)	(36,540)	(34,072)	(25,761)	(3,505)
上半期	70,487	72,545	73,848	71,391	71,661	74,587	76,037	-	-	-	-
下半期	82,485	88,969	91,232	88,304	87,658	89,615	94,682	-	-	-	-

註: 1. 분류된 부문의 數임.

2. () 안은 推定値에서 實績値를 차감한 값임.

라. 分析結果 解釋時的 留意事項

1) 分析誤差의 區分

산업연관분석이나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세수를 추정하거나 또는 세수추정치 및 실적치를 비교하여 탈세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稅收推定値와 實績値間의 差異는 分析誤差에 의한 稅收差異, 滯納 또는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에 의한 稅收差異, 脫稅에 의한 稅收差異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나 분석이 없다면 각 요인별 세수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다만 分析誤差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면 실적치와 추정치간의 차이는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의 요인에 의한 평균적인 세수차이와, 평균적인 脫稅規模의 합으로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수추정치와 세수실적간의 차이 가운데 분석 오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나머지는 모두 탈세규모로 볼 수 있다. 즉, 분석오차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稅收推定値와 實績値間의 差異는 制度圈 內에서 이루어지는 脫稅規模의 最大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分析誤差는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정결과로부터 分析誤差에 의한 誤謬를 區分하는 것이 사실상 不可能하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에서는 과세부문 및 면세부문의 구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수추정치가 크게 영향을 받으며, 회귀분석의 경우에도 분석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세수추정치를 얻게 된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세수추정치와 실적치간의 차이 가운데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의 요인에 의한 稅收差異는 발생요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요인별로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징수되는 경우

도 있는 등 표면상 脫稅와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脫稅와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제 때에 징수되지 않거나 추후에 징수된 부분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세수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각각의 규모를 구분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밖에 分析方法이나 分析模型에 따라 稅收推定値가 偏差를 보인다. 물론 특정한 방법이나 모형이 여타의 방법이나 모형보다 논리적으로 우수하여 분석오차가 작을 수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수추정치도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이상 순수히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분석오차를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제반 경제여건 및 납세여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과 행태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분석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分析誤差에 의한 稅收差異와,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稅收差異, 脫稅規模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러한 것은 산업연관표에 통계가 포착되거나 회귀분석시 사용한 1, 2기분 부가가치세 실세수 자료가 모두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연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추정 하더라도 국민계정 산출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비제도권에서의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탈세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產業聯關分析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문간 거래 및 산출에 기초하여 분석할 뿐이므로 제도권 외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非制度圈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推定이 不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回歸分析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추정할 경우에도, 산업연관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탈세규모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지만 제도권 외부에서 이루어진 탈세규모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없다. 즉, 두 가지 분석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모두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수를 추정하고 세수실적과 비교함에 있어서는 制度圈 內에서 이루어지는 脫稅規模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반면에 원천적으로 非制度圈에서 地下經濟를 이름으로써 脫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推定이 不可能하고 위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탈세규모는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국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産業聯關表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에 의한 부분은 모두 脫稅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납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회귀분석의 경우에도 분석자료에 포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탈세에 대해서는 산업연관 분석이나 과세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만으로는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별도의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비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규모 추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第Ⅳ章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産業聯關 分析結果에 대한 一考

산업연관표상에 분류된 산업분류가 부가가치세 과세부문 또는 면세부문과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산업분류가 모호해짐에 따른 誤差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과세부문의 비중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부문으로 취급하여 분석한 경우라면 세수가 과소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경우라면 세수추정치에의 오차가 증가하여 1, 2기분 실세수와 세수추정치간의 차이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402부문(세세분류)을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168부문

(세분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면세부문과 과세부문에 대한 구분이 보다 명확해져 논리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402부문의 경우와 같이 산업을 세분류할수록 각 부문간의 투입산출 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細分類할 경우에는 技術變化, 經濟構造改編, 原料 또는 技術의 代替 등에 따라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投入係數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산출표에서는 그러한 요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投入係數의 不安定性으로 인해 推定誤差가 크게 擴大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산업을 보다 크게 분류하는 경우(예: 대분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예: 세세분류)에 비해 課稅部門과 免稅部門이 混在되어 있는 부문의 附加價值 比重이 더 크다는 短點이 있다. 반면에 세분류에 비해 투입계수가 비교적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투입계수의 불안정으로 인한 추정오차는 그만큼 축소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산업부문을 보다 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부문 및 면세부문의 혼재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지지만 투입계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분석의 목적이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연도에 대한 세수추정에 있다면 산업연관표는 분석대상연도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投入係數의 不安定性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1995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1996년 또는 그 이후의 시점에서의 과표 또는 세수추정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產業分類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여 분석하느냐의 문제는 分析對象 時點과 投入係數의 安定性, 課稅部門 및 免稅部門의 混在可能性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정할 경우 산업분류가 대분류인지 또는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인지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지만 세세분류를 통해 추정한 경우가 과세부문 및 면세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 있어서는 세세분류, 즉 402부문으로 산업을 분류한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IV.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의 推定

본장에서는 第三章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 및 脫稅規模와 附加價値稅의 脫漏課標 및 脫稅規模를 추정한다.

1.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規模의 推定

개인사업소득자(또는 자영업자)의 綜合所得稅 脫漏所得은 式(II-1)과 式(II-2)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먼저 1人當¹⁾ 平均 脫漏所得은 實際所得 推定値에 所得脫漏率(= 1-所得申告率)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실제소득에서 신고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탈루소득 평균은 1994~1998년 기간 동안 각각 약 860만원, 1,110만원, 1,330만원, 1,210만원, 1,080만원 정도이다. 1인당 탈루소득액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實際所得이 증가한 반면 所得申告率이 下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97년에는 1인당 탈루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소득신고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총탈루소득 규모는 1인당 평균 탈루소득에 총납세자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綜合所得稅의 總脫漏所得 規模는 1994년 현재 약 28조 8천억원 정도로 경상GDP 대비 8.9%의 점

1)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1가구 내에 2명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으나 綜合所得者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가구 1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1가구당 대신 1인당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유비를 나타내었다. 1995년에는 탈루소득 규모가 약 39조 1천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10.4%, 1996년에는 약 48조 6천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11.6%, 1997년에는 약 41조 6천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9.2%, 1998년에는 약 39조 1천억원으로 경상GDP 대비 8.7%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소득세 총탈루소득 규모는 1994년 이래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脫漏所得의 경상GDP 대비 점유비도 1996년까지 다소 상승하다가 1997년부터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表 IV - 1〉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單位: 원, %, 拾億원, 人)

	1994	1995	1996	1997	1998
綜合所得 平均(實際所得) A	19,367,407	22,647,584	25,399,041	26,154,674	23,460,560
(申告所得) B	10,769,539	11,501,892	12,109,250	14,067,387	12,282,373
(所得申告率)	55.61	50.79	47.68	53.79	52.35
綜合所得稅 總納稅者 數 C	3,353,842	3,507,003	3,657,253	3,437,818	3,498,183
綜合所得稅 決定稅額 平均	3,129,612	3,478,045	3,669,079	4,080,024	3,015,607
納稅者 1人當 決定稅額	933,142	991,743	1,003,234	1,186,806	862,789
經常GDP	323,407.1	377,349.8	418,479.0	453,276.4	449,508.8
1人當 脫漏所得 D=A-B	8,597,868	11,145,692	13,289,791	12,087,287	11,178,187
脫漏所得 規模 E=D×C	28,835.9	39,088.0	48,604.1	41,553.9	39,069.8
脫漏所得 規模/GDP	8.92	10.36	11.61	9.17	8.69

2.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推定

가. 脫稅規模의 推定結果

綜合所得稅의 脫稅規模는 소득신고율이 가상적으로 1일 경우에 산출된 세수와, 실제의 所得申告率(推定值)下에서 산출된 세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綜合所得稅의 脫稅規模는 〈表 IV-2〉에서 보듯이 1994년에는 6조 2천억원 정도, 경상GDP 대비 1.91%로 추정되었다. 1995~1996년에는 종합소득세 탈세규모가 각각 8조 9천억원과 9조원으로 1994년에 비해 3조원 정도 증가하였다. 경상GDP 대비 비율은 1995년에 2.36%이고 1996년에는 2.15%로 추정되었다. 탈세의 절대규모는 1996년이 더 크지만 경상GDP 대비 비율은 1995년이 더 높는데, 이는 탈세규모의 증가율보다 경상GDP 성장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는 綜合所得稅 脫稅規模가 크게 축소되기 시작하여 1998년까지 각각 7조 8천억원과 6조 8천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경상GDP 대비 점유비도 각각 1.73%와 1.52%로 하락하였다.

〈表 IV-2〉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推定結果

(單位: 拾億圓, %)

	1994	1995	1996	1997	1998
經常GDP	323,407.1	377,349.8	418,479.0	453,276.4	449,508.8
綜合所得稅 脫漏稅收	6,187.8	8,909.3	9,000.4	7,836.2	6,848.6
脫漏稅收/GDP	1.91	2.36	2.15	1.73	1.52

나. 脫稅規模 變動의 要因分析

1994~1998년 기간 동안에는 1995~1996년을 경계로 세법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1994~1995년 사이의 공제체계가 유사하며, 1996년 이후의 기간 동안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개정된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1996년부터는 이전 기간에 비해 각종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종합소득세 세수가 크게 변화하였다. 1996년부터 적용된 개정세법에서는 각종 人的扣除 한도

가 上向調整되었고 標準控除 制度가 신설되는 등 綜合所得稅 負擔의 輕減 效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의 綜合所得稅 脫稅 규모가 1995년보다 다소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첫째, 1996년의 所得申告率이 47.7%(所得脫漏率=52.3%)로 1995년의 50.8%(49.2%)보다 낮아진(높아진) 데 요인이 있다. 둘째, 1996년의 綜合所得稅 납세자 수가 약 366만명으로 1995년의 351만명에 비해 약 15만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1996년의 자영업자의 綜合所得 平均금액이 2,540만원으로 1995년의 2,265만원보다 12.15%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가구당 脫稅 규모도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表 IV-1〉 참조).

반면에 1997년과 1998년에는 脫稅規模가 크게 縮小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綜合所得稅의 세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稅法改正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脫稅 규모 감소는 세법개정에 따른 脫稅의 기회비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經濟與件의 變化, 徵稅當局의 努力, 또는 納稅者의 자발적인 成實申告意識 提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97년에는 전년에 비해 綜合所得稅 脫稅規模가 12.93% 減少하였다. 1997년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綜合所得이 전년에 비해 2.98% 增加하였으며, 所得申告率 또한 47.7%에서 53.8%로 대폭 상승하면서 綜合所得稅 신고자 1인당 平均 脫稅 규모가 1996년의 1,329만원에서 1,209만원으로 減少하였다. 반면에 납세자 수는 약 366만명에서 344만명으로 약 22만명 정도, 6.00% 감소하였다. 따라서 1997년에 脫稅規模가 감소한 것은 納稅者 數가 減少한 것에 의한 부분이 46.4%($=100 \times 6.00/12.93$)이다. 나머지 53.6%는 平均所得 증가에도 불구하고 납세성실도의 하나로 볼 수 있는 所得申告率 상승에 의한 平均 脫漏所得額 減少의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다. 後者는 徵稅當局의 努力과 納稅者들의 자발적인 成實申

告意識 提高의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종합소득세 탈세규모가 12.60%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납세자 수가 1.76% 증가하였다. 납세자 수의 증가요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실제의 탈세규모 감소효과 또는 綜合所得稅 納稅者 1人當 平均 脫稅規模의 減少率은 14.36%라고 볼 수 있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종합소득 평균이 10.30%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탈세규모의 소득탄력성도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所得申告率은 53.79%에서 52.35%로 하락하여 작게나마 脫稅規模가 增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세자 1인당 평균탈루소득 규모는 1,209만원에서 1,118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분석기간(1994~1998년) 동안 綜合所得稅의 所得申告率이 50% 내외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신고된 소득과 탈루된 소득규모는 대체로 비슷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탈루세수와 결정세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가 超過累進體系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한계세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비록 신고된 소득과 탈루된 소득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다소 작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소득에 기초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수보다 소득탈루에 의한 탈루세수의 절대규모가 훨씬 더 크게 된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편의상 1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다면, <表 IV-1>과 <表 IV-2>에서 보듯이, 종합소득세 탈세규모와 결정세수의 비율이 약 2 대 1 정도이므로 脫稅의 所得彈力性을 대략 2 정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所得稅 脫稅規模의 所得彈力性은 累進稅率構造에도 영향을 받지만 실제 종합소득규모와 所得申告率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실제의 綜合所得이 커질수록, 그리고 所得申告率이 작아질수록 탈세규모의 所得彈力性, 또는 脫稅規模와 申告所得을 바탕으로 산출한 決定稅收와의 相對比率은 커진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絕對限界稅率 또는 相對限界稅率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 附加價值稅 脫漏課標 및 脫稅規模의 推定

가. 附加價值稅 脫漏課標의 推定

附加價值稅의 脫漏課標는 產業聯關分析의 消費法, 즉 式(II-5)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규모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의 규모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비성향은 <表 IV-2>에서 보듯이 1994~1998년 기간 동안 0.68~0.75 정도이다. 그리고 消費支出 對比 附加價值稅 課標의 比率은 <表 IV-3>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표 추정결과 중 消費法에 의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402부문으로 세세분류한 경우에 소비지출은 240조 7,222억원이고, 면세분 소비를 차감하고 과세부문에서 면세부문으로 이동한 총산출을 더해 산출한 부가가치세 과표는 156조 4,775억원이다. 따라서 消費支出 對比 附加價值稅 課標의 比率은 0.65이다.

<表 IV-3>에서 보듯이 이러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과표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1994년에는 약 13조 4천억원 정도, 1995~1998년에는 각각 18조 7천억원, 23조 8천억원, 18조 2천억원, 17조 1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附加價值稅 脫漏課標의 절대규모는 1996년까지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탈루과표를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表 IV-3〉 附加價値稅 脫漏課標 및 脫稅規模의 推定結果(消費法)

(單位: 拾億圓, %)

	1994	1995	1996	1997	1998
經常GDP	323,407.1	377,349.8	418,479.0	453,276.4	449,508.8
平均消費性向 (A)	0.7156	0.7353	0.7518	0.6753	0.6753
課稅分 消費支出/總消費支出(B)	-	65.0	-	-	-
綜合所得稅 脫漏所得 規模 (C)	28,835.9	39,088.0	48,604.1	41,553.9	39,069.8
附價稅 脫漏課標(D=A×B×C)	13,411.9	18,682.8	23,751.5	18,239.9	1,149.0
脫漏課標/GDP	4.15	4.95	5.68	4.02	3.82
附價稅 脫漏稅收(E=0.1×D)	1,341.2	1,868.3	2,375.2	1,824.0	1,714.9
脫漏稅收/GDP	0.41	0.50	0.57	0.40	0.38
附加價値稅 1, 2期分 稅收	13,704.4	15,297.2	17,582.3	19,582.3	17,362.8
脫漏比率=脫漏稅額/稅收	9.79	12.21	13.51	9.31	9.88

註: 과세분 소비지출의 총소비지출 대비 점유비에 대한 통계는 1995년도 산업연관분석의 결과에서 도출한 수치만이 이용 가능함. 1995년 이외의 연도에 대해서도 1995년의 추정결과를 원용하여 사용하였음.

부가가치세 탈루과표의 경상GDP 대비 비율은 동 연도 동안 각각 4.2%, 5.0%, 5.7%, 4.0%, 3.8%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7년에는 부가가치세 세수규모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脫漏課標의 絕對規模 및 경상GDP 대비 점유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탈세규모 및 탈세비율이 증가하였던 추세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납세자들의 成實申告意識이 크게 提高되었으며, 탈세

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특례과세자들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및 과표양성화를 위한 징세당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997년의 당초 국세수입 예산이 74조 3천억원이었는데 비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지는 등 제반 세수여건이 크게 열악해짐에 따라 실제 징수실적이 69조 9,277억원에 불과하게 되면서 징세당국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게 된 요인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연구결과만으로는 그러한 것에 대해 보다 분명히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나. 附加價値稅 脫稅規模의 推定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는 式 (II-6)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994~1998년 기간 동안 각각 약 1조 3천억원, 1조 9천억원, 2조 4천억원, 1조 8천억원, 1조 7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附加價値稅 脫稅規模를 1, 2기분 稅收實績과 비교해보면 1994년에는 탈세규모가 귀속분 세수의 9.8%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95~1998년에는 각각 12.2%, 13.5%, 9.3%, 9.9% 정도로 추정되었다.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탈세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세수에 대비한 탈세비율이 1997년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1998년 동안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附加價値稅 稅收가 크게 減少하였기 때문이다.

다. 附加價値稅 脫稅規模의 區分

위의 가項에서 추정하였듯이 1995년의 附加價値稅의 總脫稅規模는 1조 8,683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脫稅는 각 부문별 거래내역이 파악되어 產業聯關表에 통계가 포착되는 경우 또는 회귀방정식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制度圈 內에서 탈세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원천적으로 產業聯關分析이나 回歸分析에서 배제되는 非制度圈, 즉 地

下經濟에서 탈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産業聯關分析(402부문)과 回歸分析(OLS)을 통해 추정한 1995년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각각 15조 6,478억원과 16조 1,51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각각의 세수추정치는 1995년도 귀속분 세수(1, 2기분 세수)를 각각 3,506억원과 8,542억원씩 초과하고 있다²⁾.

만약 産業聯關分析과 回歸分析을 통해 추정한 稅收推定値와 實績値間的 差異를 모두 탈세에 의한 것, 즉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탈세로 본다면 總脫稅規模 1조 8,683억원 가운데 각각 3,506억원(부가가치세 세수의 2.3%) 또는 8,542억원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脫稅規模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1조 5,177억원 또는 1조 141억원은 제도권 외부, 즉 地下經濟에서 이루어진 脫稅規模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모두 성실신고하여 탈세가 전혀 없었다면 가상적인 부가가치세 총세수는 실적치(15조 2,972억원)와 탈세분(1조 8,683억원)을 합산한 17조 1,655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附加價値稅 稅收推定値와 實績値間的 差異가 단순히 分析誤差에 의한 것이거나,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에 의해 탈세와 무관하게 발생한 오차로만 본다면³⁾, 各項에서 추정된 탈세규모 1조 8,683억원은 모두 제도권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만약 分析誤差가 零이고 滯納, 納稅猶豫, 破

-
- 2) 産業聯關分析에서는 산업연관표에 포착된 제도권 내에서의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세수추정치는 제도권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분을 제외한 제도권 내에서의 세수로 볼 수 있다. 回歸分析에서는 從屬變數로서 歸屬分 稅收實績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세수를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경우에도 제도권 내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回歸分析에 의한 경우에는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수 차이가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경우를 지칭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産, 申告遲延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납세자 모두가 성실신고하여 脫稅가 적이었다면, 1995년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실적치(15조 2,972억원), 세수추정치와 실적치간의 차이(3,506억원 또는 8,542억원), 탈세(1조 8,683억원)를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의 총세수규모는 17조 5,161억원(産業聯關分析) 또는 18조 197억원(回歸分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産業聯關分析이나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計도 나름대로의 분석오차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일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계분석에 의한 稅收推定値와 稅收實績値間的 差異가 과연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脫稅에 의한 것인지, 또는 滯納, 納稅猶豫, 破産, 申告遲延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론이 불가능하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稅收實績은 稅收라는 확률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가 특정 기간에 대해 특정한 값으로 실현된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稅收豫測値는 세수라는 확률변수에 대한 조건부 기대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여건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産業聯關分析이나 回歸分析 등을 통해 얻은 稅收豫測値는 평균적인 세수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세수예측 결과를 토대로 세수실적과 탈세규모의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진 脫稅規模에 대해 위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第三章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논리전개는 세수예측치가 오차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통계분석이 분석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정모형의 형태나 방법론에 따라 세수예측치가 달라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권 내와 제도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를 확정적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종합소득세와 달리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所得彈力性은 1을 초과하지만 附加價値稅 脫稅規模의 所得彈力性은 1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규모를 추정하여 탈세규모를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마찬가지로이지만 탈세규모의 추정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단순하여 쉽게 탈세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와 산업연관분석 및 세수합수 추정을 통해 歸屬分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收를 推計하였으며,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1994~1998년 기간 동안의 綜合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脫漏所得 또는 脫漏課標와 脫稅規模를 추정하였다.

産業聯關分析과 回歸分析 방법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計는 방법론과 모형의 차이로 인해 다소의 분석오차를 나타내었지만 柳一鎬(1990), 玄鎭權·成明宰(1994), 成明宰(1995, 1997A)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귀속분 세수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분석오차를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1995년도 귀속분 세수의 추정결과를 예로 들면 세수추정치와 실적치간의 차이가 3,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등 오차가 많이 축소되었다¹⁾.

綜合所得稅 稅收推計는 세수규모 자체보다는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所得申告率을 推定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탈루소득과 탈루과표 및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신고율을 추정함으로써 稅法改正效果에 대한 추정은 물론이고 成實申告度 또는 徵稅當局의 徵稅努力 強化에 따른 稅收效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세수추계 방법론을 확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결과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 규모는 1994~1996년 동안 28

1) 물론 産業聯關分析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計는 事後的으로 過去の 세수추정치를 검증하는 데에는 우수하지만 向後的 稅收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가가치세 세수추계는 기존의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예측력 분석시에 비교자료로서 활용하거나 탈세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 8천억~48조 6천억원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1997~1998년에는 약 40조원 내외의 수준으로서 이전 기간에 비해 脫漏所得 規模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脫漏所得의 경상GDP 대비 점유비도 8.9~11.6%에서 8.7~9.2%로 하락하였다. 탈루소득 규모가 1996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한 것은,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의 所得申告率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納稅意識이 提高되었으며 徵稅當局의 課標陽性化 노력이 다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및 소득신고율을 기초로 탈세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綜合所得稅의 脫稅規模는 1994~1996년 동안 6조 2천억~9조원 정도에 이르러 탈세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소득신고율 상승 및 탈루소득 감소로 인해 종합소득세 탈세규모가 7조 8천억원 정도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탈세규모가 더욱 축소되어 6조 8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이전 기간에 비해 탈세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경상GDP 대비 점유비는 1995년을 정점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탈세의 절대 규모는 1996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상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1995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脫稅規模의 增加率보다 經常成長率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대부분이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綜合所得稅의 脫稅는 곧 附加價值稅의 脫稅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을 바탕으로 附加價值稅의 脫稅規模(또는 脫漏課標 規模)를 추정해본 결과 1994년에는 1조 4천억원 정도 탈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1994년 1, 2기분 실세수의 9.8%, 경상GDP의 0.4% 정도이다. 이후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996년까지 증가하여 1996년에는 2조 4천억원에 이르러 실세수 대비 13.5%, 경상GDP 대비 0.6%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1997년부터는 다시 탈세규모가 감소하여 1998년에는 附加價値稅 脫稅規模가 1조 7천억원 정도, 실세수 대비 9.9%, 경상GDP 대비 0.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綜合所得稅는 超過累進稅率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루소득이 증가할수록 脫稅規模는 累積的으로 增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실제소득이 일정하더라도 所得申告率이 낮을수록 실세수에 대비한 脫稅規模는 累積的으로 增加하며, 所得申告率이 높을수록 脫稅規模는 累積的으로 縮小된다. 따라서 綜合所得稅 脫稅規模의 所得彈力性²⁾은 1보다 큼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에 附加價値稅는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탈루과표가 증가하더라도 탈세규모는 탈루과표에 비례하여 증가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수추계를 위해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로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消費函數(또는 所得函數)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을 추정하였으며,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所得申告率이 同一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들 가정에 의존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가정을 적절히 수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을 수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정 작업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현실성을 검증해보고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의 소득신고율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완화하면 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6) 여기서 말하는 소득탄력성은 GDP 대비 탄력성이라기보다는 脫漏所得에 대한 所得彈力性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 金裕燦,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 免稅範圍 設定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政策報告書 95-03, 韓國租稅研究院, 1995.
- 羅城麟·玄鎮權, 『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Tax-Benefit 模型을 中心으로』, 研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研究院, 1993.
- 成明宰, 『稅收推計模型과 稅收展望』, 研究報告書 95-05, 韓國租稅研究院, 1995.
- _____, 『單位根 檢定과 稅收推計』, 研究報告書 97-03, 韓國租稅研究院, 1997(A).
- _____, 『微視的 接近方法을 利用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와 稅收效果 推定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97-05, 韓國租稅研究院, 1997(B).
- _____, 『需要函數 分析을 통한 消費稅 稅收推計』, 政策報告書 98-07, 韓國租稅研究院, 1998(A).
- _____, 『美國과 캐나다의 稅收推計』, 其他報告書, 韓國租稅研究院, 1998(B).
- _____, 「經濟危機 1年間 所得稅·消費稅 負擔分布의 變化와 租稅政策方向」, 未發表資料, 1999.
- 成明宰·全瑛俊,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研究報告書 98-02, 韓國租稅研究院, 1998.
- 成明宰·玄鎮權, 『稅收展望과 稅收推計의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4-04, 韓國租稅研究院, 1994.
- 안석환·강인수·김종민·전영준,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소비세

-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韓國租稅研究院, 1998.
- 柳時權, 『附加價値稅 稅制와 行政의 改善方案』, 研究報告書 96-11, 韓國租稅研究院, 1996.
- 柳一鎬, 「附加價値稅의 稅收推計」, 盧基星·柳一鎬·尹建永·李鎮淳(편),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0, pp. 89~122.
- _____, 「脫稅의 經濟的 效果와 類型 및 防止에 관한 研究」, 政策研究資料 92-12, 韓國開發研究院, 1992.
- _____, 「우리나라의 脫稅規模 推定: 所得稅와 附加價値稅」, 玄鎮權(編), 『租稅行政과 政策課題』, 研究論文集 98-01, 韓國租稅研究院, 1998, pp. 39~68.
- 崔 洸,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7.
- 崔英順, 「個人所得稅의 脫稅規模: 推定方法의 檢討와 實證」, 『公共經濟』, 第2卷, 韓國公共經濟學會, 1997.
- 崔濟旭, 「勤勞所得과 事業所得의 稅負擔 衡平性」, 未發表論文, 韓國經濟研究院, 1999.
- Pellechio, Anthony J. and Catharine B. Hill, "Equivalence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thods of Calculating the Value-Added Tax Base: Application in Zambia." IMF. 1996.

附錄 I : 綜合所得稅 課稅體系 - 控除體系를 中心으로¹⁾

본절에서는 이 기간 동안 事業所得者들이 납세의무를 지니는 綜合所得稅의 控除體系에 대해 살펴본다. 所得控除에는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다.

1. 勤勞所得控除의 變遷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여타의 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²⁾.

1975년 이후 198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定額控除 제도로 운용되어 왔으나 1982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定額分과 所得比例分으로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1982년부터,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해 주고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액과 일정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편되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成明宰(1997B), 成明宰·全瑛俊(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인적자본에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成明宰(1997B)와 成明宰·全瑛俊(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1982년 이래 勤勞所得控除의 정액분 공제수준과 소득비례분의 공제비율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997~1998년에는 정액분 500만원, 소득비례분의 공제비율은 30%, 최고공제한도는 9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1999년에는 1998년의 경제위기 동안 크게 타격을 입은 중산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도 이원화하여 근로소득금액 500~1,500만원에 대해서는 40%,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공제비율을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은 중소득층 이상의 계층에서 소득공제의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경감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附表 I - 1〉 勤勞所得控除 體系의 變化推移

(單位: 萬圓)

	賞與特別控除	勤勞所得控除
1975	月定給與額의 100% 限度 (12)	18
1976	月定給與額의 200% 限度 (14)	30
1977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36)	30
1978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40)	40
1979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52)	48
1980~1981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52)	54
1982	88 以下 全額, 88 超過 300 以下分의 20%, 300 超過分의 10%	(170)
1983~88	94 以下 全額, 94 超過 300 以下分의 20%, 300 超過分의 10%	(170)
1989~90	140 以下 全額, 140 超過 400 以下分의 25%, 400 超過分의 15%	(230)
1991~92	230 以下 全額, 230 超過分의 30%	(490)
1993	250 以下 全額, 250 超過分의 30%	(600)
1994	270 以下 全額, 270 超過分의 30%	(620)
1995	310 以下 全額, 310 超過分의 30%	(690)
1996	400 以下 全額, 400 超過分의 30%	(800)
1997~1998	500 以下 全額, 500 超過分의 30%	(900)
1999~	500 以下 全額, 500~1,500 40%, 1,500 超過分의 10%	(1,200)

註: 賞與特別控除은 1981년말에 폐지되었으며, () 안은 賞與特別控除 및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나타냄.

2. 人的控除의 變遷

人的控除라 함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맞벌이부부특별공제 등과 같이 인적구성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인적공제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종합소득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와 달리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도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인적공제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1996년부터 基本控除로 통합되었고, 맞벌이부부특별공제는 폐지되었으며 나머지는 1996년부터 追加控除로 개편되었다.

基本控除는 1995년까지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공제수준을 높게 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공제수준을 다소 낮게 하는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불문하고 1인당 공제액을 100만원으로 단일화하여 공제체계가 크게 단순화되었다.

1996년의 개편에서 기본공제의 공제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급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많이 인정되던 각종 비과세수당을 대폭 과세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득세 과세의 저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追加控除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부녀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맞벌이부부로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追加控除는 社會福祉厚生 측면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追加控除도 기본공제와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 1인당 50만원씩 정액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附表 I -2〉 所得稅 基本控除의 變化推移

(單位: 萬圓/人)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1975	18	12	6
1976	18	12	12
1977	24	18	12
1978	24	24	12
1979	24	30	18
1980~1981	30	30	24
1982~1988	30	42	24
1989~1992	48	54	48
1993	60	54	48
1994~1995	72	54	48
1996~	100	100	100

註: 1. 1996년부터는 基本控除로 통합되었음.

2. 1996년부터 單獨家口와 2人 家口의 경우에는 人的控除의 下限이 각각 200만圓과 250만圓으로 설정되었음.

〈附表 I -3〉 所得稅 追加控除의 變化推移

(單位: 萬圓/人)

	障礙者	敬老優待	婦女子世帶主	맞벌이夫婦
1975~1981	12	—	—	—
1982~1988	30	—	—	—
1989~1990	48	36	—	—
1991~1992	48	48	54	—
1993	48	48	54	54
1994~1995	54	48	54	54
1996~	50	50	50	50

註: 1996년부터 追加控除로 통합되었음.

이상과 같이 1996년에는 인적특성에 기초한 소득공제 체계가 개편되어 납세자 대부분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그러나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서는 인적공제의 하한을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수자 가구에 대해 追加控除項目 가운데 小數控除者 追加控除를 추가하여 單獨家口와 2人 家口의 경우 각각에 대해 100만원과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特別控除의 變遷

特別控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무주택근로자공제, 창작소득을 대상으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社會保障的 性格의 支出額이나 低所得層에 대한 支援을 위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부분으로 實費控除的 또는 實費辨償的 性格을 띠고 있다³⁾. 따라서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자 가구 내의 가족구성이 동일하더라도 보험료나 의료비 지출액과 기부금의 크기, 주택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勤勞所得稅의 實效稅負擔率이 달라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

특별공제 역시 근로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특별공제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특별공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출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부분으로 실비변상적인 특징

3) 實物資本에 대해서는 減價償却이 인정되는 반면에 人的資本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바, 特別控除는 人的資本에 대한 減價償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所得控除項目으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을 지닌다는 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자 이외의 소득자에게 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포착되는 반면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포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공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으며 대신 1996년부터 표준공제라 하여 定額(6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실액공제적 성격을 지니는 특별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은 소득세 과세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특별공제의 각 공제항목에 대해 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保險料控除는 1977년에 연간 12만원을 한도로 신설되었으며, 이후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1993년부터 최근(1998년)까지 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9년부터 중산층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공제한도가 7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보험료공제의 대상은 의료보험료와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다. 다만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공제된다.

醫療費控除는 1978년에 24만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신설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요양비, 요양급여, 의료비 보조금 등을 제외한 의료비 지출액을 대상으로 공제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의료비 지출액 가운데 총급여의 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에서 공제해 주었다. 1991년부터는 이 비율이 3%로 하향조정되었다. 1998년까지는 의료비 공제의 한도가 100만원이었으나 1999년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教育費控除는 1983년에 신설되었으며 1988년까지는 본인의 교육비 전액과 直系卑屬 2인까지 1인당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

었으며, 1989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초중고 교육비 공제범위를 전액으로 확대하였다. 1996년부터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대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확대되었다. 대학생과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1998년까지는 각각 230만원과 70만원을 한도로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공제한도의 확대도 중산층 보호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無住宅勤勞者控除은 1980년에 신설되어 1995년까지 적용된 공제제도로서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액(100만원) 공제해 주었다.

1980년에는 360만원을 한도로 하는 창작소득공제가 신설되었으며 1990년말에 세법개정을 통해 1991년부터 폐지되었다.

寄附金特別控除은 1982년에 신설되었으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前者는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대해 전액 공제해 주며, 後者는 연간 총급여의 5/100(사립학교는 10/100)를 한도로 공제해 준다.

1996년부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특별공제라는 명목으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공제체계를 개편하면서 표준공제를 신설하여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特別控除은 勤勞所得者에게만 적용되지만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별공제와 차별화된다.

그 밖에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공제금액 30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대상으로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백화점 카드, 직불카드 등이며 선불카드는 제외된다.

〈附表 I -4〉 所得稅 特別控除의 範圍와 限度의 變化推移

(單位: 萬圓)

	保險料	醫療費	教育費	無住宅	創作所得	寄附金
1977	12	—	—	—	—	—
1978	12	24*	—	—	—	—
1979	15	24*	—	—	—	—
1980~1981	24	24*	—	—	360	—
1982	24	24**	—	—	360	法定寄附金은 全額 控除 + 指定寄附金은 總給與의 5/100를 限度로 控除
1983~1988	24	24**	A	—	360	
1989	24	24**	本人, 直系卑屬	—	360	
1990	24	24**		100	360	
1991~1992	24	100***	直系卑屬	100	—	
1993~1995	50	100***	2人까지	100	—	
1996~1998	50	100***	全額 #	—	—	
1999~	70	200***	—	—	—	

註: 1. 醫療保險料는 全額 控除.

2. *는 醫療保險法 또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 醫療保險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療養費 療養給與, 勤勞基準法 또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療養費 療養給與,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費補助金을 제외하며, **는 當該年度 總給與의 5/100 超過金額, ***는 當該年度 總給與의 3/100 超過金額이 控除對象임.

3. A(1983~1988) 기간 동안에는 本人의 경우 全額을 공제하고 直系卑屬 2인까지는 1人當 12만원을 限度로 함. #는 1996년부터 대학생과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까지 공제를 확대하여 각각 230만원과 70만원을 限度로 공제해 주었고, 1999년부터는 각각의 한도가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4. 1996년부터 特別控除로 改編되었으며, 特別控除 대신 標準控除을 선택하는 경우 證憑書類의 有無에 관계없이 60만원을 공제해 줌.

4.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變遷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1979년 8월 14일에 제정된 임시특별세액공제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81년 12월 31일의 세법개정 이래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제도는 1989년에 폐지되었으나, 1990년부터 재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附表 I - 5〉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變化推移

(單位: 萬원, %)

	對 象 者	勤勞所得稅額控除率
1979.8 制定	月定給與額 5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30
	50萬원 超過	20
1981	月定給與額 3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20
	30萬원 超過 50萬원 以下	10
1982(勤勞 所得稅財控除)	月定給與額 3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20
	40萬원 以下	10
1983~1988	月定給與額 3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30
	40萬원 以下	20
	50萬원 以下	10
1989	폐지	—
1990 再新設	全勤勞者	20 (30萬원 限度)
	日傭勤勞者	20
1990.7 改正	月定給與額 100萬원 以下	40 (80萬원 限度)
	100萬원 超過	30 (80萬원 限度)
1991	日傭勤勞者	40
	年間 總給與額 3,600萬원 以下	20 (50萬원 限度)
1992~1995	日傭勤勞者	20
	全勤勞者	20 (50萬원 限度)
1996 改正	全勤勞者 — 算出稅額 50萬원 以下分	45 (50萬원 限度)
	算出稅額 50萬원 超過分	20
1997~	全勤勞者 — 算出稅額 50萬원 以下分	45 (60萬원 限度)
	算出稅額 50萬원 超過分	30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稅額控除해 주는 제도로서 여타 종류의 소득에 비해 소득포착률이 높은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해지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의 상한을 설정하여 고소득층에 과도한 세경감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부터 세액공제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여타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여타의 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금액의 비중을 곱한 것을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⁴⁾.

4)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과세하자는 견해가 있다. 成明宰·全瑛俊(1998)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부터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근로소득을 분리과세하게 되면 고소득자의 소득세 한계세부담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초래하여 소득세의 누진과세 기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근로소득 분리과세의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지나치게 경감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附錄 II : 效用 極大化를 利用한 適正 所得申告率

특정 납세자에게 주어진 실제소득이 y 로 주어지고, 脫稅가 摘發될 確率, 所得稅 算出函數, 加算稅率이 각각 p , $t(\cdot)$, π 로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그리고 납세자는 綜合所得稅 신고시에 所得을 x 만큼 申告(申告所得)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납세자는 $y-x$ 만큼의 소득을 탈루하게 된다.

이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脫稅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그 납세자의 可處分所得은 $y-t(x)$ 가 되며, 만약 탈세가 포착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때의 可處分所得은 $y-t(y)-\pi\{t(y)-t(x)\}$ 가 된다. 탈세가 적발될 확률 p 를 매개로 하여 이를 기대효용으로 표현하면 $U = p[y-t(y)-\pi\{t(y)-t(x)\}]^\rho + (1-p)[y-t(x)]^\rho$ 으로 표현된다.

第II章에서 언급하였듯이 綜合所得稅 納稅者는 所得 y 가 주어진 상황하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용 U 를 극대화하고자 申告所得 x 를 선택한다.

$$\max_x U = p[y-t(y)-\pi\{t(y)-t(x)\}]^\rho + (1-p)[y-t(x)]^\rho$$

$$\text{단, } \rho > 0, \rho \neq 1.$$

이때의 일계조건을 산출하면 다음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rho p [y-t(y)-\pi\{t(y)-t(x)\}]^{\rho-1}$$

$$\pi t'(x) - \rho(1-p)[y-t(x)]^{\rho-1} t'(x) = 0$$

만약 소득신고율(x/y)이 1, 즉 $y=x$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y 가 면세점 이하이거나 $y=0$ 일 경우이다. 이는 해당 납세자가 그의 실제소득을 모두 신고하더라도 綜合所得稅가 免稅되기 때문에 구태여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할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한다.

$t'(x)$ 가 零이 아닌 경우에 일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rightarrow & \left[(p\pi)^{\frac{1}{\rho-1}} - (1-p)^{\frac{1}{\rho-1}} \right] y - (1+\pi)(p\pi)^{\frac{1}{\rho-1}} t(y) \\ & + \left[\pi(p\pi)^{\frac{1}{\rho-1}} + (1-p)^{\frac{1}{\rho-1}} \right] t(x) = 0 \end{aligned}$$

이를 미분하여 정리하면,

$$\begin{aligned} \frac{dx}{dy} = & \frac{(1-p)^{\frac{1}{\rho-1}} - (p\pi)^{\frac{1}{\rho-1}}}{\pi(p\pi)^{\frac{1}{\rho-1}} + (1-p)^{\frac{1}{\rho-1}}} \cdot \frac{1}{t'(x)} + \\ & \frac{(1+\pi)(p\pi)^{\frac{1}{\rho-1}}}{\pi(p\pi)^{\frac{1}{\rho-1}} + (1-p)^{\frac{1}{\rho-1}}} \cdot \frac{t'(y)}{t'(x)} \end{aligned}$$

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현실에서 탈세가 적발될 확률이 매우 낮고 (예: $p=0.1$) 가산세율이 20% ($\pi=0.2$)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납세자가 危險忌避의 性向, $\rho < 1$ 의 특성을 보인다면 (예: $\rho=0.5$)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c{dx}{dy} \doteq -\frac{4.99}{t'(x)} + 5.99 \frac{t'(y)}{t'(x)} < 0, \therefore \max[t'(\cdot)] = 0.44$$

반대로 납세자가 危險選好的 性向, 즉 $\rho > 1$ 의 특성을 보인다면 (예: $\rho=1.5$)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c{dx}{dy} \doteq -\frac{0.999}{t'(x)} + 0.001 \frac{t'(y)}{t'(x)} > 0, \therefore \max[t'(\cdot)] = 0.44$$

위의 두 관계식으로부터 매우 특이한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위험기피적 성향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의 실제소득이 증가하면 신고소득은 감소하고, 반면에 위험선호적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소득 또한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實際所得 수준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 所得申告率이 1이라는 분석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위험기피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면세자의 범주에 잔류하는 반면, 위험기피자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와 관계없이 항상 소득신고율이 1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에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현실에서 脫稅가 摘發될 確率이 상당히 낮으며, 탈세가 적발되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加算稅率도 낮기 때문이다. 만약 脫稅가 적발될 確率 p 와 加算稅率 π 가 충분히 크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탈세 적발 확률과 가산세율이 낮은 상황하에서는 납세자들의 最適化 行爲가 경제학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문에서는 개별납세자들의 소득신고율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최적화에 따른 實際所得(y)과 所得申告率(x/y)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분적분에 의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frac{d(x/y)}{dy} = \frac{\frac{dx}{dy}y - x}{y^2} = \frac{1}{y} \frac{dx}{dy} - \frac{x}{y^2}$$

이 경우 특정 (p, ρ, π)의 조합에 따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0.2, \rho=1.5, \pi=0.2 :$$

$$\frac{d(x/y)}{dy} = \frac{1}{y} \frac{dx}{dy} - \frac{x}{y^2} = \frac{1}{yt'(x)} \frac{0.6384 + 0.00192t'(y)}{0.64032} - \frac{x}{y^2}$$

$p=0.1, \rho=1.5, \pi=0.2 :$

$$\frac{d(x/y)}{dy} = \frac{1}{y} \frac{dx}{dy} - \frac{x}{y^2} = \frac{1}{yt'(x)} \frac{0.8096 + 0.00048t'(y)}{0.81008} - \frac{x}{y^2}$$

$p=0.2, \rho=1.1, \pi=0.2$ 또는 $p=0.1, \rho=1.1, \pi=0.2$

$$\frac{d(x/y)}{dy} = \frac{1}{y} \frac{dx}{dy} - \frac{x}{y^2} = \frac{1}{yt'(x)} - \frac{x}{y^2}$$

附錄 III : 都市家計年報 原始資料

1. 資料構成

본 연구에서는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과 附加價値稅의 脫漏課標 및 각각에 대한 脫稅規模를 추정하기 위해 產業聯關表와 都市家計年報의 原始微視資料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본질에서는 후자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탈루소득과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분석대상기간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1995년 산업연관표의 활용도에 맞추어 199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1998년까지의 5년간으로 하였다.

도시가계연보 자료의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勤勞所得者와 自營業者 家口이며, 조사항목은 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자료와 기타 일부의 자산변동과 세부담 등이다. 이 가운데 소득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자료가 보고되어 있으며,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조사자료의 신뢰성이 의문시되어 소득 관련 사항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조사항목 가운데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稅負擔額이 보고되어 있는데, 실제로 납세자들의 稅金 負擔額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그들이 부담한 세액이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의문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에 조사보고된 세부담 관련 자료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所得 및 消費支出 관련 자료로부터 직접 세부담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失業者 家口를 勤勞者 家口에

포함시켰다.

본래의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에서는 월별로 조사가 누락된 가구는 그 가구와 특성이 유사한 가구를 복제함으로써 통계자료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조사기간에도 동일가구의 자료가 2개 이상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사누락된 가구의 정보를 추정치로 대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추정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가구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조사가 누락된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사된 가구의 조사자료 중 중복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標本의 誤差 可能性을 回避하기 위하여 4개월 이상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월별 자료를 합산한 후 연간단위로 환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연도별로 4,600여개에서 3,300여개 정도에 이른다.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는 單獨家口 또는 1人 家口를 제외하고 가구원의 수가 2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본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家口當 家口員의 數를 구해보면 평균적으로 3.6~3.8명 정도이다. 가구유형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3.9~4.0명 사이로서 근로자 가구의 3.5~3.7명보다 다소 많다.

家口當 就業人의 數는 평균적으로 1.5명 내외이며 근로자 가구보다는 자영업자 가구의 취업자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主의 年齡은 평균적으로 38~43세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所得特性

먼저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총소득은 1994년에 약 2,18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1996년까지 2,490만원 및 3,120만원 정도로 증가

(附表 III-1) 都市家計年報 調査資料의 標本數

(單位: 家口, 名, 歲)

	1994	1995	1996	1997	1998
標本の數 ¹⁾ (全體)	4,645	4,627	3,607	3,282	3,343
(勤勞者) ²⁾	3,358	3,317	2,448	2,228	2,087
(自營業者) ²⁾	1,287	1,310	1,159	1,054	1,256
家口員數 (全體)	3.62	3.69	3.72	3.78	3.75
(勤勞者)	3.52	3.59	3.63	3.70	3.65
(自營業者)	3.89	3.95	3.90	3.92	3.91
就業人數 (全體)	1.42	1.47	1.49	1.64	1.47
(勤勞者)	1.37	1.39	1.40	1.59	1.38
(自營業者)	1.58	1.67	1.66	1.73	1.60
家口主의 年齡 (全體)	37.87	40.84	42.93	42.95	42.39
(勤勞者)	37.33	40.29	42.46	42.02	41.82
(自營業者)	39.42	42.16	43.84	44.57	43.30

註: 1. 4개월 이상 조사된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분석의 편의상 실업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에 포함시켰음.

하였으며, 1997년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연말에는 외환위기로 경기가 급전직하하면서 2,740만원 수준으로 所得이 크게 下落하였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소득수준이 더욱 하락하여 2,37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실업자 가구를 근로자 가구에 포함시켰는데 근로자 가구 가운데 실업자를 제외하였을 경우의 總所得은 위의 수준보다 다소 크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勤勞者 家口의 所得은 대부분 家口主의 勤勞所得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 평균은 1994년에 1,260만원 수준이었으며,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7년까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83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失業 增加, 賃金 削減 등의 여파로 1,660만원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이 수준은 1996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附表 III-2〉 都市家計年報 調査資料의 所得 特性(勤勞者 家口)

(單位: 圓)

	1994	1995	1996	1997	1998
總所得 平均 (失業者 包含時)	21,832,081	24,903,992	31,170,006	27,429,251	23,712,090
(失業者 除外時)	23,119,471	26,349,461	31,437,343	28,064,838	25,129,571
家口主의 勤勞所得 平均	12,641,307	13,922,487	16,277,980	18,340,851	16,643,847

3. 消費支出 特性

消費支出 수준도 총소득과 매우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1994년의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액은 1,650만원 정도였으며, 1995년과 1996년에는 1,990만원과 2,310만원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에는 1,83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는 1,620만원 수준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의 消費支出 수준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평균은 1994~1998년에 각각 1,590만원, 1,900만원, 2,260만원, 1,760만원, 1,540만원 수준이었는데 비해 自營業者 家口의 消費支出 수준은 각각 1,820만원, 2,190만원, 2,470만원, 1,960만원, 1,7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의 편의상 실업자 가구를 근로자 가구에 포함시킨 것이 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자영업자 가구보다 작게 나타나게 한 데 일조를 하였다. 그렇지만 실업자 가구를 근로자 가구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근로자 가구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비지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적인 소득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은 第三章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추정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소득 관련 자료가 조사되어 있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平均消費性向을 구해보면, 1994년에는 0.73 정도였던 것이 1995년에는 0.76으로 상승하였다가 1996년에는 0.71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1997년부터는 소비성향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0.64~0.6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의 소비성향이 1997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라 所得과 消費支出 모두 크게 감소하였지만 특히 그 가운데 所得 減少率이 消費支出 減少率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세부담과 관련된 자료는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각 표본별 직접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第四章를 참조하기 바란다.

〈附表 III-3〉 都市家計年報 調査資料의 消費支出 特性

(單位: 원)

	1994	1995	1996	1997	1998
消費支出 平均					
全體	16,517,808	19,858,943	23,057,192	18,321,317	16,175,372
勤勞者(失業者 包含時)	15,929,583	19,002,331	22,235,442	17,588,013	15,423,958
勤勞者(失業者 除外時)	16,231,203	19,079,114	22,453,365	17,689,059	15,736,824
自營業者	18,201,746	21,918,491	24,680,164	19,596,125	17,384,533
勤勞者 家口의 平均消費性向					
失業者 包含時	0.7296	0.7630	0.7134	0.6412	0.6505
失業者 除外時	0.7021	0.7241	0.7142	0.6303	0.6262

附錄 IV : 1984~1977年 資料를 사용한 回歸分析 結果

〈附表 IV - 1〉 回歸分析을 통한 附加價値稅 稅收推定 結果
(1984~1997年 資料)

(單位: 百萬元)

說明變數	推定方法	單純最小自乘法		코크레인-오컷(C-O)		共積分(CCR)	
		OLS ₃	OLS ₄	C-O ₃	C-O ₄	CCR ₃	CCR ₄
常數		-2.213 (-1.998)	-5.433 (-38.519)	-3.424 (-4.676)	-3.265 (-3.816)	-1.910 (-0.657)	-5.636 (-33.898)
時間趨勢		0.018 (2.927)	- (-)	0.012 (2.744)	- (-)	0.020 (1.273)	- (-)
ln經常GDP		1.369 (17.790)	1.462 (18.297)	1.242 (25.019)	1.240 (25.676)	1.478 (6.582)	1.706 (13.113)
ln經常輸入		0.441 (5.896)	0.554 (7.585)	0.409 (4.174)	0.499 (5.283)	0.408 (5.177)	0.477 (5.784)
ln經常設備投資		-0.301 (-6.526)	-0.305 (-5.783)	-0.194 (-3.160)	-0.275 (-3.821)	-0.349 (-4.392)	-0.406 (-5.436)
ln經常輸出		-0.667 (-11.17)	-0.601 (-9.522)	-0.493 (-7.552)	-0.491 (-7.351)	-0.736 (-10.82)	-0.681 (-9.951)
R ₂ [調整된 R ₂]		0.999 [0.998]	0.998 [0.998]	0.999 [0.999]	0.983 [0.981]	- -	- -
더빈-왓슨 統計值		1.422	1.425	2.004	2.061	-	-
MMSE		0.064	0.086	0.095	3.804	0.073	0.124
LAD		1.972	2.302	2.298	16.240	2.057	3.079
稅收推定值	實 績						
1995 上半期	70,487	69,024	69,242	69,580	74,436	68,403	68,109
1995 下半期	82,485	84,248	85,753	84,614	89,538	84,267	86,540
1996 上半期	79,329	80,159	80,065	80,402	84,621	79,596	79,058
1996 下半期	96,494	100,385	101,697	99,984	103,865	100,342	101,912
1997 上半期	89,337	89,710	89,137	89,722	93,257	88,944	87,690
1997 下半期	104,502	105,507	107,372	105,680	110,126	105,214	108,277
1998 上半期	80,947	77,877	78,449	80,807	85,331	76,076	76,868
1998 下半期	92,681	96,670	93,703	95,272	98,566	97,688	97,361

註: () 안은 t-값임.

附錄 V : 產業分類 : 課稅部門 및 非課稅 部門의 分類

— ○ : 과세부문, × : 면세부문

1. 28部門

〈附表 V - 1〉 產業部門別 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28部門)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	농림수산물	×	
2	광산물	○	무연탄, 소금 면세
3	음식료품	○	
4	섬유·가죽제품	○	
5	목재·종이제품	○	
6	“인쇄, 출판 및 복제”	○	서적 등 출판물 면세
7	석유·석탄제품	○	연탄, 무연탄 면세
8	화학제품	○	
9	비금속광물제품	○	
10	제1차금속	○	
11	금속제품	○	
12	일반기계	○	
13	전기전자기기	○	
14	정밀기기	○	
15	수송장비	○	
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	
17	전력가스및수도	○	수돗물 면세
18	건설	○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
19	도소매	○	
20	음식점및숙박	○	
21	운수및보관	○	
22	통신및방송	×	
23	금융및보험	×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	
25	공공행정및국방	×	
26	교육및보건	×	
27	사회및기타서비스	○	
28	기타	○	

2. 77部門

〈附表 V-2〉 産業別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77部門)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	작물	×	
2	축산	×	
3	임산물	×	
4	수산물	×	
5	석탄	○	연탄, 무연탄 면세
6	원유	○	
7	금속광석	○	
8	비금속광물	○	
9	육류 및 낙농품	×	
10	수산가공품	○	
11	정곡 및 제분	○	
12	제당 및 전분	○	
13	“빵, 과자 및 국수류”	○	
14	조미료 및 유지	○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 식료품	○	
16	음료품	○	
17	배합사료	○	농민공급분 영세율
18	담배	×	1995년 당시 면세
19	섬유사	○	
20	섬유작물	○	
21	의류 및 장신품	○	
22	기타 섬유제품	○	
23	가죽제품 및 모피	○	
24	목재 및 나무제품	○	
25	펄프 및 종이	○	
26	“인쇄, 출판 및 복제”	○	도서, 잡지 등 출판물 면세
27	석탄제품	○	
28	석유제품	○	
29	유기화학기초제품	○	
30	무기화학기초제품	○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	
32	화학섬유	○	
33	비료 및 농약	○	농민 공급분 면세
34	의약품 및 화장품	○	
35	기타 화학제품	○	
36	플라스틱제품	○	
37	고무제품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38	유리제품	○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	
4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	
42	선철 및 강반성품	○	
43	철강1차제품	○	
44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	
45	금속제품	○	
46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	
47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	
48	전기기계 및 장치	○	
49	전자기기부분품	○	
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	
51	컴퓨터 및 사무기기	○	
52	가정용 전기기기	○	
53	정밀기기	○	
54	자동차 및 부분품	○	
55	선박	○	
56	기타 수송장비	○	
57	가구	○	
58	기타 제조업제품	○	
59	전력	○	
60	도시가스 및 수도	○	수돗물 면세
61	건축 및 건축보수	○	
62	토목건설	○	
63	도소매	○	
64	음식점 및 숙박	○	
65	운수 및 보관	○	
66	통신 및 방송	×	
67	금융 및 보험	×	
68	부동산	○	토지 면세
69	사업서비스	○	
70	공공행정 및 국방	×	
71	교육 및 연구	×	
72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	
73	문화오락서비스	○	박물관, 미술관 입장 면세
74	기타서비스	○	
75	사무용품	○	
76	가계외소비지출	○	
77	분류불명	○	

3. 168部門

〈附表 V-3〉 産業部門別 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168部門)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	벼	×	
2	맥류 및 잡곡	×	
3	채소 및 과일	×	
4	기타 식용작물	×	
5	비식용작물	×	
6	축산	×	
7	육림	×	
8	원목	×	
9	기타임산물	×	
10	수산어획	×	
11	수산양식	×	
12	석탄	○	연탄, 무연탄 면세
13	원유	○	
14	천연가스	○	
15	철광석	○	
16	비철금속광석	○	
17	건설용골재 및 석재	○	
18	기타 비금속광물	○	
19	육류 및 육가공품	×	가공품 과세
20	낙농품	×	
21	수산가공품	○	
22	정곡	×	
23	제분	×	
24	제당	○	
25	전분 및 당류	○	
26	빵 과자 및 국수류	○	
27	조미료	○	
28	유지 및 식용유	○	
29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30	기타 식료품	○	미가공식료품 면세
31	주류	○	
32	음료수 및 얼음	○	
33	배합사료	○	
34	담배	×	1995년 당시 면세
35	천연섬유사	○	
36	화학섬유사	○	
37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	
38	천연섬유직물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39	화학섬유직물	○	
40	기타 섬유직물	○	
41	편조원단	○	
42	섬유 표백 및 염색	○	
43	편직제 의류 및 장신품	○	
44	직물제 의류 및 장신품	○	
45	가죽 및 모피 의류	○	
46	기타 섬유제품	○	
47	가죽 및 모피	○	
48	가방 및 핸드백	○	
49	신발	○	
50	기타 가죽제품	○	
51	목재	○	
52	나무제품	○	
53	펄프	○	
54	종이류	○	
55	종이제품	○	
56	“인쇄, 출판 및 복제”	○	
57	석탄제품	○	연탄, 무연탄 면세
58	나프타	○	
59	연료유	○	
60	기타 석유제품	○	
61	석유화학기초제품	○	
62	기타 유기화학기초제품	○	
63	무기화학기초제품	○	
64	합성수지	○	
65	합성고무	○	
66	화학섬유	○	
67	비료	○	
68	농약	○	
69	의약품	○	
70	화장품 및 비누	○	
71	“염료, 안료 및 도료”	○	
72	기타 화학제품	○	
73	플라스틱제품	○	
74	타이어 및 튜브	○	
75	기타 고무제품	○	
76	유리제품	○	
77	도자기	○	
78	점토제품	○	
79	시멘트	○	
80	콘크리트제품	○	
8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82	선철 및 합금철	○	
83	강반성품	○	
84	열간압연품	○	
85	냉간압연강재	○	
86	주단강품	○	
87	기타 철강1 차제품	○	
88	비철금속괴	○	
89	비철금속1 차제품	○	
90	건설용 금속제품	○	
91	금속제 용기	○	
92	공구 및 철선제품	○	
93	기타 금속제품	○	
94	엔진 및 터빈	○	
95	일반목적용 기계부품	○	
96	산업용 운반기계	○	
97	공조 및 냉온장비	○	
98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	
99	금속가공용 기계	○	
100	농업 및 건설기계	○	
101	기타특수목적용 기계	○	
102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	
103	기타 전기장치	○	
104	전자표시장치	○	
105	반도체	○	
106	기타 전자부분품	○	
107	영상 및 음향기기	○	
108	통신 및 방송기기	○	
109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10	사무용기기	○	
111	가정용전기기기	○	
112	의료 및 측정기기	○	
113	광학기기	○	
114	시계	○	
115	자동차	○	
116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	
117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	
118	선박	○	
119	철도차량	○	
120	항공기	○	
121	기타수송장비	○	
122	가구	○	
123	장난감 및 문동용품	○	
124	기타 제조업제품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25	전력	○	
126	도시가스	○	
127	열공급업	○	
128	수도	×	
129	주택건축	○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
130	비주택건축	○	
131	건축보수	○	
132	교통시설 건설	○	
133	기타 토목 건설	○	
134	도소매	○	
135	음식점	○	
136	숙박	○	
137	철도운송	×	
138	도로운송	○	시내버스 면세
139	수상운송	○	일부 면세
140	항공운송	○	
141	운수보조서비스	○	
142	하역	○	
143	보관 및 창고	○	
144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	
145	통신	×	
146	방송	×	
147	금융	×	
148	보험	×	
149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	×	
150	부동산	×	토지 면세
151	사업관련전문서비스	○	법무 및 회계서비스 등 면세
152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	
153	광고	○	
154	기타 사업서비스	○	
155	공공행정 및 국방	×	
156	교육기관	×	
157	연구기관	×	
158	기업내 연구개발	×	
159	의료 및 보건	×	
160	사회복지사업	×	
161	위생서비스	×	
162	문화오락서비스	○	비영리 박물관, 도서관 면세
163	사회단체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164	수리서비스	○	
165	개인서비스	○	
166	사무용품	○	
167	가계외소비지출	○	
168	분류불명	○	

4. 402部門

〈附表 V-4〉 産業部門別附加價値稅 課稅 및 免稅部門의 區分(402部門)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	벼		×		
2	보리		×		
3	밀		×		
4	잡곡		×		
5	채소		×		
6	과실		×		
7	콩류		×		
8	감자	류	×		
9	유지	물	×		
10	양공작물		×		
11	기타식용작물		×		
12	섬유작물		×		
13	임단배		×		
14	화훼작물		×		
15	천연고무		×		
16	종자및묘목		×		
17	기타비식용작물		×		
18	농산물		×		
19	육우		×		
20	양돈		×		
21	가금		×		
22	기타축산		×		
23	육림		×		
24	원목		×		
25	식용임산물		×		
26	기타임산물		×		
27	해면어획		×		
28	내수면어획		×		
29	해면양식		×		
30	내수면양식		×		
31	무연탄		×		
32	유연탄		○		
33	원유		○		
34	천연가스		○		
35	철광석		○		
36	동광석		○		
37	연및아연광석		○		
38	기타비철금속광석		○		
39	모래및자갈		○		
40	쇄석		○		
41	기타건설용석재		○		
42	석회석		○		
43	요연원료광물		○		
44	원연		×		
45	기타비금속광물		○		
46	도추		×		
47	가금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48	육가공품	○	
49	유유	○	흰우유 면세
50	유제품	○	
51	이이스크림	○	
52	어육및어류	○	
53	수산제품	○	
54	수산냉동제품	○×	
55	수산저장품	○	
56	기타수산식품	○	
57	정미	×	
58	정맥분	×	
59	제분당	×	
60	원당	○	
61	정제분당	○	
62	전분당	○	
63	당류	○	
64	빵및곡분과자	○	
65	설탕과자	○	
66	국수류	○	
67	정제염	○	
68	발효조미료	○	
69	기타조미료	○	
70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면세
71	동물성유지	○	
72	식물성유지및식용유	○	
73	과실및채소가공품	○	
74	커피및차류	○	
75	인삼식품	×	가공품 과세
76	누룩및맥아	○	
77	두부	×	
78	기타식료품	○	
79	주정	○	
80	소주	○	
81	탁주및약주	○	
82	맥주	○	
83	기타주류	○	
84	청량음료	○	
85	광천수및생수	○	
86	알음	○	
87	배합사료	○	
88	담배	×	1995년 당시 면세
89	견사	○	
90	모사	○	
91	면사	○	
92	마사	○	
93	재생섬유사	○	
94	합성섬유사	○	
95	사및기타섬유사	○	
96	견직물	○	
97	모직물	○	
98	면직물	○	
99	마직물	○	
100	재생섬유직물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01	합성섬유직물		○	
102	기타섬유직물		○	
103	편조원단		○	
104	섬유표백 및 염색		○	
105	편직제의 섬유신품		○	
106	편직제의 섬유신품		○	
107	직물제의 섬유신품		○	
108	기타직물의 섬유신품		○	
109	가죽의 류제품		○	
110	모피의 류제품		○	
111	직물제품		○	
112	기타섬유제품		○	
113	“근로포 및 어망”		○	어업용기자재 영세율
114	가죽		○	
115	모피		○	
116	가방 및 핸드백		○	
117	가죽신발		○	
118	운동화 및 기타신발		○	
119	기타가죽제품		○	
120	재재목		○	
121	합판		○	
122	재생 및 강화 목재		○	
123	건축용 목제품		○	
124	목제품용 기		○	
125	기타 목제품		○	
126	펠프		○	
127	신문용지		○	
128	인쇄용지		○	
129	기타 원지 및 판지		○	
130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	
131	종이용기		○	
132	종이 문구 및 사무용지		○	
133	위생용 종이제품		○	
134	기타 종이제품		○	
135	신문		×	
136	출판		×	
137	인쇄		○	
138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	
139	연탄		×	
140	기타 석탄제품		○	
141	나프타		○	
142	휘발유		○	
143	제트유		○	
144	등유		○	
145	경유		○	
146	중유		○	
147	액화석유가스		○	
148	윤활유제품		○	
149	기타 석유정제품		○	
150	석유화학기초제품		○	
151	석유화학중간제품		○	
152	석탄화합물		○	
153	기타 기초화학합물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154	산업용가스	○	
155	기초무기화합물	○	
156	합성수지	○	
157	합성고무	○	
158	재생섬유	○	
159	합성섬유	○	
160	합성소화합물	○	
161	비료	○	농민공급분 영세율
162	농약	○	농민공급분 영세율
163	의약품	○	
164	화장품 및 치약	○	
165	비누 및 세제	○	
166	“염료, 안료 및 유연제”	○	
167	도료	○	
168	잉크	○	
169	접착제 및 젤라틴	○	
170	화약 및 불꽃제	○	
171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	
172	사진용 화학제품	○	
173	기타 화학제품	○	
174	플라스틱 1차제품	○	
175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	
176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	
177	타이어 및 튜브	○	
178	산업용 고무제품	○	
179	기타 고무제품	○	
180	판유리 및 1차 유리	○	
181	산업용 유리제품	○	
182	기타 유리제품	○	
183	산업용 도자기	○	
184	가정용 도자기	○	
185	내화요업제품	○	
186	건설용 점토제품	○	
187	시멘트	○	
188	레미콘	○	
189	콘크리트 제품	○	
190	석회 및 석고 제품	○	
191	석재 제품	○	
192	석면 및 암면 제품	○	
193	연마제	○	
194	아스팔트 제품	○	
195	기타 도석 제품	○	
196	선철	○	
197	합금철	○	
198	조강	○	
199	철근 및 봉강	○	
200	형강	○	
201	선재 및 권조	○	
202	열간압강판	○	
203	강관 (주철강관 제외)	○	
204	냉간압연강재	○	
205	주철물	○	
206	단조물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207	표면처리장재	○	
208	기타철강1차제품	○	
209	동괴	○	
210	알루미늄괴	○	
211	연철아연괴	○	
212	금은괴	○	
213	기타비철금속괴	○	
214	동1차제품	○	
215	알루미늄1차제품	○	
216	기타비철금속1차제품	○	
217	건물용금속제품	○	
218	금속구조물	○	
219	금속탱크및저장용기	○	
220	금속포장용기	○	
221	공구류	○	
222	나사제품	○	
223	철선제품	○	
224	부착용금속제품	○	
225	금속처리금속제품	○	
226	가정용금속제품	○	
227	기타금속제품	○	
228	엔진및터빈	○	
229	밸브	○	
230	“베어링, 기어및전동요소”	○	
231	산업용운반기계	○	
232	공기조절장치및냉장냉동장비	○	
233	보일러	○	
234	난방및조리기기	○	
235	펌프및압축기	○	
236	공기및액체여과청정기	○	
237	기타일반목적용기계	○	
238	금속절삭가공기계	○	
239	금속성형처리기계	○	
240	농업용기계	○	농민단계 영세율
241	건설및광물처리기계	○	
242	음식품가공기계	○	
243	섬유기계	○	
244	금형및주형	○	
245	제지및인쇄용기계	○	
246	기타특수목적용기계	○	
247	발전기및전동기	○	
248	변압기	○	
249	기타전기변환장치	○	
250	전기공급및제어장치	○	
251	전선및케이블	○	
252	전지	○	
253	전구및조명장치	○	
254	기타전기장비	○	
255	전자관	○	
256	기타전자표시장치	○	
257	개별소자	○	
258	집적회로(IC)	○	
259	저항기및축전기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260	전자코일및변성기	○	
261	인쇄회로기판	○	
262	기타전자부품	○	
263	TV	○	
264	VTR	○	
265	음향기기	○	
266	기타영상음향기기	○	
267	유선통신기기	○	
268	무선통신및방송장비	○	
269	컴퓨터및주변기기	○	
270	사무용기기	○	
271	냉장고	○	
272	세탁기	○	
273	선풍기	○	
274	가정용 전열기기	○	
275	기타가정용전기기기	○	
276	의료기기	○	
277	자동조정및제어기기	○	
278	측정및분석기기	○	
279	촬영기및영상기	○	
280	기타광학기기	○	
281	시계	○	
282	승용차	○	
283	승합차	○	
284	화물차	○	
285	특장차	○	
286	자동차용엔진	○	
287	자동차부품	○	
288	트레이일러및컨테이너	○	
289	강철재선박	○	
290	기타선박	○	
291	선박수리및부분품	○	
292	철도차량	○	
293	항공기	○	
294	모터사이클	○	
295	자전거및기타수송장비	○	
296	목재가구	○	
297	금속가구	○	
298	기타가구	○	
299	장난감및오락용품	○	
300	운동및경기용품	○	
301	악기	○	
302	문방구	○	
303	귀금속및보석	○	
304	모형및장식용품	○	
305	기타제조업제품	○	
306	수력	○	
307	화력	○	
308	원자력	○	
309	자가발전	○	
310	도시가스	○	
311	열공급업	○	
312	수도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313	철근철골조주택	○	국민주택 면세
314	기타주택	○	국민주택 면세
315	철근철골조비주택	○	
316	기타비주택	○	
317	건축보수	○	
318	도로시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319	철도시설	○	국가(철도청) 면세
320	지하철시설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321	항만시설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322	공항시설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323	하천사방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324	상하수도시설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325	농림수산물	○	
326	도로토목	○	
327	전력시설	○	
328	통신시설	○	
329	기타건설	○	
330	도매	○	
331	소매	○	
332	음식점	○	
333	숙박	○	
334	여객운송	×	
335	철도화물운송	×	국가(철도청) 제공용역 면세
336	도로여객운송	×	택시, 고속버스 등 과세
337	도로화물운송	○	
338	연안및내륙수상운송	×	
339	외항운송	×	여객선 등 과세
340	항공운송	○	
341	육상운수보조서비스	○	
342	수상운수보조서비스	○	
343	항공운수보조서비스	○	
344	하역	○	
345	보관및창고	○	
346	기타운수관련서비스	○	
347	우편	×	
348	전신전화	×	
349	부가통신	○	
350	방송(비영리)	×	
351	방송(산업)	×	
352	통화금융기관	×	
353	비통화금융기관	×	
354	생명보험	×	
355	손해보험	×	
35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	
357	주택소유	×	
358	부동산임대	○	주택임대 면세
359	부동산관련서비스	○	
360	법무및회계서비스	×	1995년 당시 면세
361	건축및토목공학서비스	○	
362	기타공학관련서비스	○	
363	컴퓨터관련서비스	○	
364	기계장비및용품임대	○	
365	광고	○	

일련번호	산 업	과세여부	비 고
366	여론조사및뉴스공급	○	여론조사 과세, 뉴스 면세
367	청소및소독서비스	×	
368	농림어업서비스	×	
369	기타사업서비스	○	
370	중앙정부	×	
371	지방정부	×	
372	교육기관(국공립)	×	
373	교육기관(사립)	×	
374	교육기관(산업)	×	
375	연구기관(국공립)	×	
376	연구기관(비영리)	×	
377	연구기관(산업)	×	
378	기업내연구개발	×	
379	의료및보건(국공립)	×	
380	의료및보건(비영리)	×	
381	의료및보건(산업)	×	
382	사회복지사업(국공립)	×	
383	사회복지사업(비영리)	×	
384	위생서비스(국공립)	×	
385	위생서비스(산업)	×	
386	문화서비스(국공립)	×	
387	문화서비스(기타)	×	
388	영화	○	
389	“연극, 음악및기타예술”	○	비영리 순수예술 등 면세
390	운동및경기관련서비스	○	비영리 순수예술 등 면세
391	기타오락서비스	○	
392	산업및전문단체	×	
393	기타사회단체	×	
394	자동차수리서비스	○	
395	기타개인수리서비스	○	
396	세탁	○	
397	이용및미용	○	
398	가사서비스	○	
399	기타개인서비스	○	
400	사무용품	○	
401	가계외소비지출	○	
402	분류불명	○	

附錄 VI : 所得稅 負擔 推定結果

1. 勤勞所得稅 負擔

도시가계연보의 원시자료를 사용한 勤勞者 家口의 勤勞所得稅 負擔 추정결과는 〈附表 V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시가계연보에서는 가구원별로 근로소득을 분리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액을 산출하여 가구당 勤勞所得稅 總負擔額 平均을 산출하였다.

勤勞者 家口의 1994년도 家口當 勤勞所得稅 平均負擔額은 43만 7천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하여 1997년에는 71만 1천원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8년에는 가구를 포함하여 취업 가구원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 부담이 하락하였다.

물론 1994~1998년 기간 사이에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등 稅法改正¹⁾에 따라 勤勞所得稅 負擔이 輕減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1997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1998년에 적용된 세법은 1997년과 동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1998년에 勤勞所得稅 負擔이 減少한 것은 勤勞所得 자체의 減少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에는 1996년에 비해 근로자 가구의 總所得이 減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勤勞所得稅 負擔은 오히려 增加하였는데 이는 家口主

1) 稅法改正效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第3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附表 VI-1〉 勤勞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勤勞者 家口)

(單位: 원)

	1994	1995	1996	1997	1998
家口當總所得平均	21,832,081	24,903,992	31,170,006	27,429,251	23,712,090
總 勤 勞 所 得	15,452,119	17,177,049	20,146,690	23,127,002	20,061,482
家口主의勤勞所得	12,641,307	13,922,487	16,277,980	18,340,851	16,643,847
勤勞所得稅負擔	437,377	575,252	666,730	711,037	583,237

의 勤勞所得이 增加한 데 따른 것이다. 즉,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대부분 면세점 이상이고 근로소득세의 세율체계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가구주의 근로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勤勞所得稅率 체계가 累進構造로 되어 있다는 점과 家口主의 勤勞所得이 계속 增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勤勞所得稅 부담의 增加率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勤勞所得 控除 등 각종 所得控除가 擴大된 데 따른 것이다.

2. 利子·配當所得稅 負擔

利子·配當所得稅는 대부분 원천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개로 모두 원천징수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하였다. 다만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자료도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의 총소득 대비 이자·배당소득의 점유비가 근로자 가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영업자 가

구의 총소득 추정치에 근로자 가구의 이자·배당소득 점유비를 곱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배당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배당소득세 부담을 추정하였다.

利子·配當所得稅 負擔은 1994년 이래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가구당 절대세부담은 1994~1995년에 2만 3천원 정도였으며, 1995년에는 3만원, 1997년에는 4만 5천원, 1998년에는 4만 9천원 정도로 증가하였다.

1997년까지 이자·배당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주로 利子·配當所得 자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인 반면 1998년에 稅負擔이 增加한 것은 소득 및 저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배당소득세의 稅率이 상승된 데 따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즉, 1998년에는 이자·배당소득세율이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이자소득세율은 다시 22%로 인상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1998년에 源泉徵收稅率이 상승되지 않았다면 가구당 평균 이자·배당소득세 부담액 평균은 3만원 정도로 1996년 수준과 비슷하며, 1997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곧 경제위기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金融所得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가구 유형별로는 勤勞者 家口보다 自營業者 家口의 세부담 수준이 다소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총소득 수준이 전자보다 높다는 데 기인한다.

〈附表 VI-2〉 利子·配當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

(單位: 원)

	1994	1995	1996	1997	1998
全 體	22,277	23,375	30,192	44,802	49,275
勤勞者家口	22,155	21,935	29,501	44,345	48,214
自營業者家口	22,624	26,837	31,557	45,595	50,983

3. 所得稅 總負擔 計

勤勞所得稅와 綜合所得稅, 利子·配當所得稅를 합산한 總所得稅 負擔額은 1997년에는 58만 8천원 정도로 추정되며, 1995~1997년에는 각각 72만 1천원, 81만원, 93만원 정도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였던 1998년에는 가구당 총소득세 부담 평균이 74만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만약 1998년에 이자·배당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담은 약 72만 7천원 수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유형별로는 自營業者 家口의 稅負擔이 勤勞者 家口의 稅負擔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이 포착되고 또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결정세액과 실제의 세부담은 거의 일치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종합소득세는 실제의 부담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수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自營業者 家口가 체감하는 綜合所得稅 負擔額과는 큰 차이가 있다. 1997년의 종합소득세 징수분 세수가 3조원 정도인데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세수가 약 4조 1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실제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추정세액의 약 4분의 3 수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者 家口間의 絶對 所得稅 負擔 隔差는 최근 들어 縮小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附表 VI-3〉 所得稅 負擔 平均의 推定結果

(單位: 元)

	1994	1995	1996	1997	1998
總所得稅 (全體)	587,999	720,970	810,031	929,575	739,654
(勤勞者 家口)	459,532	597,187	696,231	755,382	631,451
(自營業者 家口)	955,767	1,018,580	1,034,790	1,232,401	913,773

4. 稅法改正效果의 推定結果

가. 推定結果

1994년 기간 동안의 소득세제 개편내용은 附錄 I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개편을 토대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附表 VI-4〉에 나타나 있다.

〈附表 VI-4〉에서 보듯이 각 귀속연도별 소득세 부담액이 1994년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1997년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4~1997년 기간 동안의 소득세법의 개정이 稅負擔을 輕減시켜 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1998년에는 종합소득세 체계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利子·配當所得稅의 源泉徵收稅率이 引上됨에 따라 원천징수분 세수가 다소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稅法改正效果의 效果比較

1998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의 세법과, 1994년의 소득세법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1994년 이래 1998년까지 소득세법의 개편이 없었다면 1998년의 所得稅負擔 平均은 119만 1천원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1998년에는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이 7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1994~1998년 사이에 있었던 所得稅法 改正으로 인해 절대액으로는 45만원, 감소율로는 37.90% 정도의 대폭적인 세경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1994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94년의 세법과, 1998년의 소득세법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자. 1994년에 이미 1998년의 세법이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은 41만 6천원 정도로 1994년 세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세 부담 58만 8천원보다 절대액으로는 17만원, 감소율로는 29.21%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되었을 것이다.

〈附表 VI-4〉 所得稅法 改正效果의 推定結果(總所得稅 負擔 平均)

(單位: 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年 稅法 適用時	全 體	587,999	760,448	1,076,168	1,391,704	1,191,136
	勤勞者 家口	459,532	653,056	1,035,812	1,345,462	1,191,925
	自營業者 家口	955,767	1,018,651	1,155,871	1,472,092	1,189,865
1995年 稅法 適用時	全 體	553,944	720,970	1,026,757	1,331,637	1,140,300
	勤勞者 家口	413,582	597,187	961,383	1,251,241	1,109,644
	自營業者 家口	955,767	1,018,580	1,155,872	1,471,676	1,189,631
1996年 稅法 適用時	全 體	444,302	603,921	810,031	1,016,472	808,492
	勤勞者 家口	295,621	450,440	696,231	882,024	742,628
	自營業者 家口	869,940	972,933	1,034,790	1,232,818	914,478
1997年 稅法 適用時	全 體	408,061	559,567	755,831	929,575	726,434
	勤勞者 家口	246,719	387,639	614,667	755,382	618,515
	自營業者 家口	869,940	972,933	1,034,633	1,232,401	900,094
1998年 稅法 適用時	全 體	416,229	568,138	766,901	946,003	739,654
	勤勞者 家口	254,843	395,682	625,484	771,642	631,451
	自營業者 家口	878,236	982,774	1,046,204	1,249,120	913,773

1994년 및 1998년 소득세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과 1998년의 소득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세법개정효과를 나타내는 稅負擔 減少率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나 분석의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綜合所得稅의 (超過)累進稅率 體系 및 平均所得水準⁶⁾의 差異에 의한 것이다. 즉, 1998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된 평균소득수준이 1994년보다 높기 때문에 1998년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1994년 자료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은 限界稅率을 적용받는 納稅者의 比率이 더 많다. 따라서 1998년 세법이 1994년 세법에 비해 공제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공제한도 확대 규모에 대비한 소득세 한계세부담 경감의 상대비율은 한계세율이 더 높은 1998년의 경우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소득세와 같이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목의 경우에는 분석시점 또는 적용시점에 따라 세법개정효과 의 절대규모는 물론이고 상대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6) 평균신고소득 수준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國文要約〉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 脫稅規模의 推定과 稅收推計의 正確性 提高

成 明 宰

본 연구는 附加價值稅 및 附加價值稅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납부하는 綜合所得稅에 대해 脫稅規模를 추정함으로써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에 대한 稅收推計의 正確性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사업소득자들의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세수추계 과정을 거쳐 脫漏所得의 比率과 綜合所得稅 脫稅規模를 추정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면세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부문의 비중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탈루과표와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綜合所得稅의 脫漏所得 규모는 1994~1996년 동안 28조 8천억~48조 6천억원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1997~1998년에는 약 40조원 내외로, 이전 기간에 비해 脫漏所得 規模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脫漏所得의 경상GDP 대비 점유비도 8.9~11.6%에서 8.7~9.2%로 하락하였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 및 소득신고율을 기초로 탈세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綜合所得稅의 脫稅規模는 1994~1996년 동안 6조 2천억~9조원 정도에 이르러 탈세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소득신고율 상승 및 탈루소득 감소로 인해 종합소득세 탈세규모가 7조 8천억원 정도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탈세규모가 더욱 축소되어 6조 8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이전 기간에 비해 탈세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을 바탕으로 附加價値稅의 脫稅規模 (또는 脫漏課標 規模) 를 추정해본 결과 1994년에는 1조 4천억원 정도 탈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1994년 1, 2기분 실세수의 9.8%, 경상GDP의 0.4% 정도이다. 1996년에는 부가가치세 탈세규모가 2조 4천 억원에 이르러 실세수 대비 13.5%, 경상GDP 대비 0.6%까지 상승하였다. 1998년에는 附加價値稅 脫稅規模가 1조 7천억원 정도, 실세수 대비 9.9%, 경상GDP 대비 0.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bstract〉

Estimating Tax Evasion of Global Income Tax and VAT of Korea

Sung, Myung Jae

Many VAT payers who are self-employed small businesses are thought to evade VAT as well as global income tax. We estimated evaded global income tax and VAT amounts in 1994~1998 using estimates of income-tax-evaded income of self-employed small businessmen.

We estimate the global-income-tax evaded income and the evaded global income tax amount directly from estimating income tax compliance ratios of individual taxpayers using household consumption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We also estimate the evaded VAT amounts from the income-tax-evaded income of small businesses: estimate the VAT evaded consumption expenditure by multiplying an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to evaded income at the first stage, estimate the evaded VAT base by multiplying the ratio of the VAT base to consumption expenditure to the estimate of VAT evaded consumption expenditure at the next stage, and estimate the evaded VAT amount by multiplying the tax rate (10%) to the estimate of the evaded VAT base at the final stage.

The levels of global-income-tax evaded income were estimated to be 28.8~48.6 trillion won in 1994~1996, and

about 40 trillion won in 1997~1998, respectively. Their ratios to GDP were 8.9~11.6% and 8.7~9.2%, respectively.

The estimates of evaded amounts of global income tax were 6.2~9.0 trillion won in 1994~1996. It decreased to 7.8 and 6.8 trillion won in 1997 and 1998.

The estimate of evaded amount of VAT in 1994 was 1.4 trillion won, 9.8% of collected revenue and 0.4% of GDP. In 1996, it rose to 2.4 trillion won, 13.5% of collected revenue and 0.6% of GDP. In 1998, again, it decreased to 1.7 trillion won, 9.9% of collected revenue and 0.4% of GDP.

〈著者略歷〉

成明宰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政策報告書 99-05

綜合所得稅와 附加價值稅 脫稅規模의 推定과
稅收推計의 正確性 提高

1999年 12月 28日 印刷
1999年 12月 30日 發行

著者 成明宰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1318-11610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2186-2114(代), 팩시밀리：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一志社

© 韓國租稅研究院 1999

ISBN 89-8191-160-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